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본 매뉴얼의 적용 범위

- ▶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년 전체가 전일제**로 실시하는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본 매뉴얼의 안전 운영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 일부 학생이 참여하는 현장체험활동(예 : 학생자치캠프, △△탐험대 등)이나 전일제가 아닌 체험활동(하루 일과 중 일부 시간만 체험학습 실시)의 경우 본 매뉴얼이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대책을 포함한 학교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 학생의 모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하여는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도교육청 해당 부서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조치 사항을 우선으로 하며,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한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특수학교(급), 유치원, 체육교육(생존수영, 전지훈련 등), 국외 교류학습, 경기도학생교육원(야영장) 체험학습의 경우 각 담당 부서에서 안내된 계획을 바탕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운영한다.

매뉴얼 개정 내용

개정전	개정후	개정 사유 및 근거	관련 페이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구체적 조항 명시	관련 근거 구체화	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 현장체험학습 인솔자 및 보조인력 운영 관련	인솔자 및 보조인력 운영 사항 정리표 추가	현장체험학습 인솔자 명칭 및 일부 변경 사항 반영	-
사전답사는 활성화위원회 학부모 위원 필수 참석으로 실시	사전답사는 실제 행사 당일에 참여하는 인솔교원 및 보조인력 중심으로 실시	사전답사의 목적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운영 주체가 중심이 되도록 개편함	17, 28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 학생 수송 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버스운전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추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5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확인, 미제출 시 학교에서 직접 음주측정 확인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9조	19
국외 체험학습 유의사항 - 사전답사는 1회 이상 실제 인솔자를 중심으로 실시	사전답사를 2회 이상 실시할 경우에는 최초 1회는 실사, 2회차부터는 사진, 동영상 등으로 점검 가능	국외 체험학습 사전답사 관련 학교 업무 부담 경감 요구사항 반영	41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하에 집행	현장체험학습의 경비 및 불참 학생 환불에 필요한 금액 등은 학교회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 인솔자 경비, 여비, 답사 경비, 답사에 필요한 렌트비, 여행자보험비, 보조인력 채용비 등)	근거: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1항	39
[부록]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 전세버스 관련 법령 - 기타 관련 규정	관리주체별 관련 규정 추가	46~53
[부록] 계약 관련 안내사항	계약 관련 업무흐름도 및 구체적인 운영 사항 내용 추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업무 이해를 돕고자 관련 내용 추가 기재	54~63
[각종 서식] 매뉴얼에 기재	‘경기교육모아누리집-현장체험 학습’ 사이트로 이관	매뉴얼 간소화 및 다양한 서식 제시, 용이성 제고	경기 교육 모아 누리집

현장체험학습 유형별 운영 안내

★ 아래의 순서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 유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1일형 현장체험학습	비고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 활동		
			소규모 100명 미만	대규모 100명 이상	국외 규모무관			
1	기본계획수립		○	○	○	○	○	학교교육계획 (또는 교육과정)에 반영
	미참가 학생 지도계획		○	○	○	○	○	
	인솔자		학급당 2명 필요(단, 인솔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받은 경우 학급당 1명 인솔 가능) - 학급당 1명 인솔시 인솔자는 교사만 가능					학급으로 편성되지 않는 집단의 경우 25명 기준
	안전요원		50명당 1명 의무 배치			수련원 청소년 지도사 50명당 1명 의무 배치	50명당 1명 배치 권장	※ 안전요원 연수 이수 교직원은 인솔자와 안전요원 겸임 가능
2	학생 참여에 대한 학부모 동의	여부	○	○	○	○	자율	활성화위원회에서 동의율 설정
		비율	자율 설정	자율 설정	90% 이상	자율 설정	.	
3	학생선호도조사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4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	○	○	○	○	1일형은 답사 실시 여부 심의 시에만 운영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	○	○	○	
6	사전 답사		1회 이상 필수				1회 (생략가능)*	답사 시기 학교 자율
7	사전 정보입력		○	○	○	○	자율	'경기교육모아 - 현장체험 학습-사전사후정보방' 사이트에 입력
8	교육지원청 사전 컨설팅		필요시 요청	○ **	○	필요시 요청	.	
9	사전 안전교육		○	○	○	○	○	
10	학생 및 인솔자 보험 가입		○	○	○	○	자율 (고위험 활동 포함시 가입 필수)	여행자 안심공제 또는 여행자보험 가입
11	사후 결과입력		○	○	○	○	자율	'경기교육모아 - 현장체험 학습-사전사후정보방' 사이트에 입력

* 학교장이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전 답사 생략 가능
(단, 숙박형 및 고위험활동 포함 현장체험학습은 생략 불가)

- 사전 답사를 생략하게 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건물배치도 확인(비상구 확인 등), 비상대피요령 등 사전 안전교육은 계획
수립하여 반드시 실시

** 소규모로 나눠서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숙소에서만 대규모로 운영할 경우 사전 컨설팅 대상은 아니나 숙소에서의 대규모 활동
(레크리에이션 등) 계획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 컨설팅 대상임



용어의 정의 및 현장체험학습의 구분

“현장체험학습”이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1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사전답사”란?

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인솔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전교육”이란?

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등의 모든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소규모 현장체험학습”이란?

운영시 **3학급 이하**를 선택하거나 또는 참여 **학생 수 100명 미만**의 규모를 선택하여 운영함을 말한다.(4학급 이상 그리고 100명 이상 운영시는 대규모)

tip. 소규모 : 3학급 또는 100명 미만 중 한가지 조건만 충족시
대규모 : 4학급 이상과 100명 이상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예시 : 5학급 98명-소규모, 3학급 112명-소규모, 4학급 110명-대규모)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란?(이하 “활성화위원회”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현장체험학습 안전이 상정되기 전에 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전문적·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를 말한다.

※ 다만,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함.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역할

- 숙박형 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기본계획 검토 및 자문
- * 대상이 전교생 또는 학년 전체인 경우 숙박형 체험학습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동의율 결정 및 동의율 조사 결과에 따른 실시 여부 결정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시 사전답사단 구성 및 시행
-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답사를 생략할 경우에만 안전대책 여부 심의
(학교장이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경우)
- 계약 관련 경쟁 입찰 진행시 제안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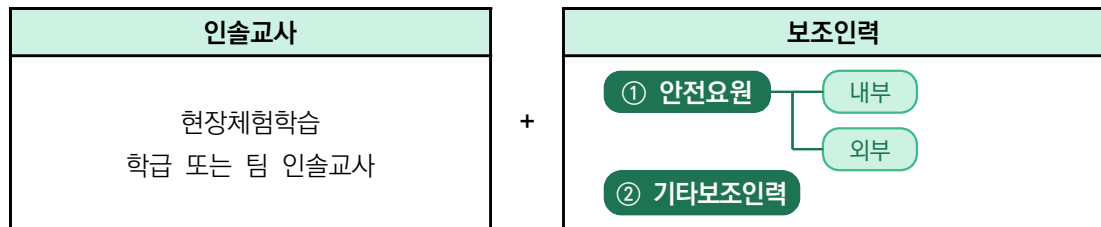


용어의 정의 및 현장체험학습의 구분

현장체험학습 인솔자 개요

인솔자 = 인솔교사 + 보조인력

- 학급당 2명 필요(단, 인솔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받은 경우 학급당 1명 인솔 가능)
※ 학급으로 편성되지 않는 경우 25명 기준
- 학급당 1명 인솔시 인솔자는 교사만 가능



인솔교사

-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로서,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받을 경우 안전요원(내부)의 역할을 겸할 수 있으나, 기금적 별도 안전요원 등 보조인력을 확보하여 인솔교사의 부담 완화 지원

보조인력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 50명당 1명 의무 배치
- 수련활동 : 수련원 청소년 지도사 50명당 1명 의무 배치
- 1일형 현장체험학습 : 50명당 1명 배치 권장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 이수 교원은 인솔교사와 보조인력 겸임 가능

안전요원

안전요원(내부)	안전요원(외부)	기타보조인력
인솔교사를 제외한 교원으로 일정 부분의 교육*을 받고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는 교직원 *다음페이지 '인솔자별 자격 부여 교육과정 안내' 참조	일정한 소지자격을 갖추고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체험학습 참여자의 안전 관련 업무 담당 [소지자격]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인솔교사 및 안전요원 배치 최소 기준을 충족하기 곤란한 경우 인솔자 및 안전요원을 지원하는 인력 [대상] 초·중등 교육 및 안전 관련 학과 등 (교·사대 및 경찰, 소방, 간호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자, 학부모(명예교사), 자원봉사자 등



인솔자별 자격 부여 교육과정 안내

인솔자유형	과정명	연수기관	이수시간	유효기간	비고
인솔교사	학교 안전교육 직무연수 (법정 의무 연수)	각종 연수기관	15시간	3년	
안전요원 (내부)	학기중 (이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길라잡이 원격연수' (※2025년 상반기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개설예정 이며 추후 공문으로 안내 예정) + (실습) 심폐소생술교육(법정 의무 연수)	(이론) 중앙교육연수원 (실습) 소속 학교	(이론) 10시간 + (실습) 3시간 = 총 13시간	2년	※매년 심폐 소생술 이수 시 1년 자격 연장 ※1년 휴직, 1년 심폐 소생술 미이수의 경우 자격 유지 가능
	여름방학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대한적십자사 경기지부	14시간	2년	
안전요원 (외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대한적십자사	14시간	2년	재교육과정 (7시간) 이수 시 2년 연장
기타 보조인력	현장체험학습 사전교육	각 교육지원청	1회	당해 학년도	공문안내

현장체험학습의 구분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 자연, 문화 등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건문을 넓히기 위해 여러 활동 장소를 오가며 실시하는 숙박형 단체 활동
- 수련활동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함양하기 위해 수련시설에서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숙박형 단체 활동
- 기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제외한 활동으로 일정 기간 숙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1일형 현장체험학습

- 하루(1일) 동안의 교육과정 운영 전체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숙박 체험활동

학생 일부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

- ▶ 일부 학생이 참여하는 현장체험활동의 경우(예 : 학생자치 캠프, △△탐험대 등)
- ▶ 전일제가 아닌 체험활동의 경우(하루 일과 중 일부 시간만 체험학습 실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과 매뉴얼의 의무 적용 대상 아님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대책을 포함한 학교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CONTENTS

1장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개요

1.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근거	3
2.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목적	3
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기본 방향	3
4.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4
5.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11
6. 현장체험학습 관련 반부패 청렴 계획	11

2장 현장체험학습별 안전조치 안내

I. 1일형 현장체험학습

1. 1일형 현장체험학습 절차(예시)	14
2. 1일형 현장체험학습 세부 추진 절차(예시)	16

II.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절차(예시)	24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 추진 절차(예시)	26
3. 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컨설팅 방안	42



3장 부 록

I.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규

1.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46
2.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48
3. 전세버스 관련 법령 일부	50
4. 기타 관련 규정	52

II. 계약 방법별 진행 절차

1. 수의계약	54
2. 입찰	56
3. 계약 시 구비서류	59
4. 계약 시 유의사항	61
5. 그 밖의 기타사항	62

III.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및 신고제

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안내	64
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안내	70
3. 안심 수학여행 점검 서비스 안내	72
4. 청소년단체현황	73

IV. 안전한 체험학습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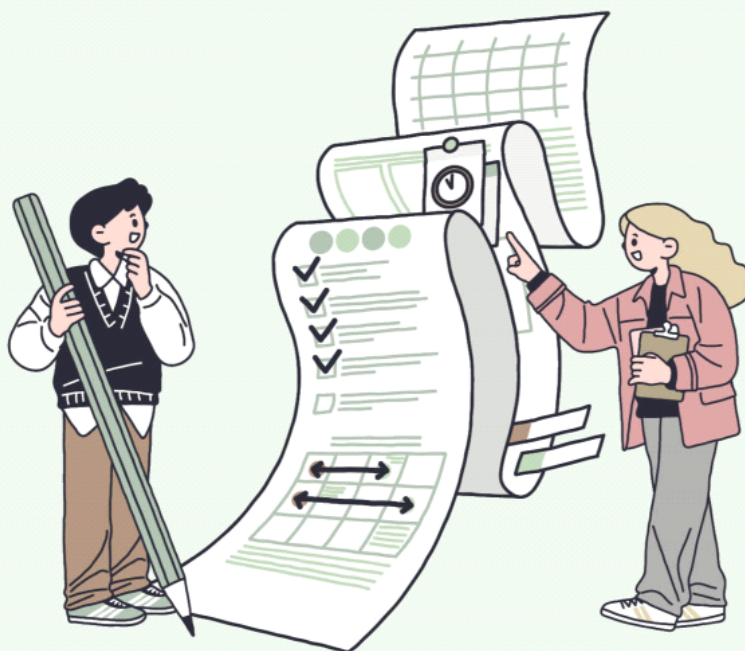
1. 숙박형 체험학습	74
2. 1일형 체험학습	78
3. 기타	80

V. 참고 사이트 및 모바일 앱 84

VI. 현장체험학습 업무 담당자 연락처 85

※ 각종 운영 서식은 경기교육모아 누리집 탑재(<https://more.goe.go.kr>)

01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개요

1.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근거
2.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목적
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기본 방향
4.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5.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6. 현장체험학습 관련 반부패 청렴 계획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개요



○ 목적 및 기본방향

목 적

-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 본 방 향

- ▶ 모든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은 안전대책을 강화하여 운영
- ▶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 형태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 현장체험학습 운영 공통 준수 사항

계획수립

- ▶ 안전 대책을 포함한 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사전답사

- ▶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체험 일정 및 코스에 따라 사전답사 실시

시설이용

- ▶ 시설 이용시 허가·등록된 시설 이용

안전교육

- ▶ 이동 경로별 교사 연수, 학생 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 (응급처치 요령, 안전 지도 요령, 안전사고 및 재난시 비상탈출 방법 등)
- ▶ 이동 수단별 사전 안전교육(학생, 교사 대상) : 버스·선박·항공·기차 등 포함
- ▶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교육 실시

비상 연락망 구축

-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비상연락체계 가동
 -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학부모 및 인솔자 비상연락망 확보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SNS(문자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연락
 - 사안 발생 즉시 구조 신고 및 교육지원청에 피해 상황 보고

인솔자 확보 및 임장지도

- ▶ 현장체험학습 형태에 맞는 인솔자 확보 운영
- ▶ 인솔자의 현장 임장지도 의무

인증 프로그램

- ▶ 위탁 운영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인증프로그램' 이용

보험확인

- ▶ 학생·인솔자 보험 가입 결정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1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근거

-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시행령 제24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2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목적

- 1 안전이 뒷받침된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한다.
- 2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기본 방향

- 1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위해 안전 대책을 강화한 소규모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한다.
- 2 현장체험학습은 관련 법규 및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부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3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소, 프로그램 등을 선정·운영한다.
- 4 각급 학교는 실시 계획을 학교교육계획(또는 학교교육과정)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 5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건강과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의 현장체험학습은 금지한다.
- 6 현장체험학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험학습 과정을 '경기교육모아-현장체험학습-사전사후 정보방'에 공개한다. (숙박형만 입력)
- 7 수익자 부담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활동 내용, 부담 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한 후 학생(학부모)의 자유로운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받아 추진한다.

4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 1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은 도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기본계획서의 안전 계획을 우선으로 적용하나 방침이 없을 경우 본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의 책임하에 안전 대책을 확보한 후 학교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별도 계획이 시행되는 유치원, 특수학교(급), 체육활동(생존수영, 해외훈련 등), 국외교류학습 관련 계획은 각 부서의 자체 안전 계획 및 매뉴얼이 우선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시행할 것

- 2 각급 학교는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
- ▶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교육활동 계획
- ▶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 ▶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양
- ▶ 학생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학생 안전대책 방안 (특수교육대상 학생지원, 환자 발생 시 대책 등 포함)
-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방안
- ▶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 안전조치 방안 및 운영 계획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교육적 필요와 학교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대규모로 운영할 수 있다.
(단, 대규모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필요)

- 3 모든 현장체험학습은 소규모(형태*) 체험학습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 단 교육적 필요와 학교 여건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안전대책을 확보하여 대규모로 운영 가능하다.

* 소규모 형태 : 3학급 이하 또는 참여 학생 수 100명 미만 단위 운영

(예 : 5학급 98명-소규모, 3학급 112명-소규모, 4학급 110명-대규모)

가.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생 주도적 기획·운영 및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한 소규모 형태의 현장체험 학습을 추진한다.

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시 사전 대중교통 예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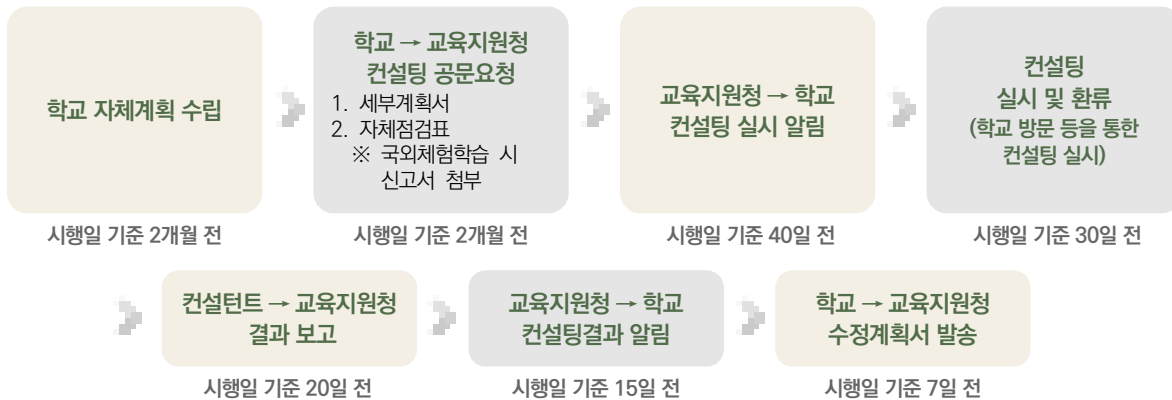
다.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대규모 수련활동 및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세부계획 및 자체점검표(서식 참고)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며 **컨설팅 대상인 경우 세부 일정을 협의**한다.

※ 주제별체험학습의 경우 소규모로 나눠서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숙소에서만 대규모로 운영할 경우 안전요원 확보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한 경우 컨설팅 대상은 아니나 숙소에서 대규모 활동(레크레이션 등)이 계획된 경우 교육지원청 컨설팅 대상임.

| 세부계획서와 자체점검표 제출 대상 및 컨설팅 대상 구분 |

체험 구분	규모	소규모	대규모
1일형 체험학습		서류제출×, 컨설팅×	서류제출×, 컨설팅×
수련활동		서류제출×, 컨설팅×	서류제출○, 컨설팅×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서류제출×, 컨설팅×	서류제출○, 컨설팅○
국외 체험학습		서류제출○, 컨설팅○	서류제출○, 컨설팅○

라. 컨설팅 절차(예시)



4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적정한 인솔교사와 안전요원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가. 학급당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급당 인솔자 1명이 인솔할 수 있다. 학급당 인솔자가 1명의 경우 반드시 교사가 인솔한다.

* 학급이 아닌 집단 편성인 경우 25명 기준

※ 인솔자는 인솔 교사, 내·외부 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 등을 포함하는 총 인원수임

나.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시 교육지원청 컨설팅이 의무 사항이며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단, 수련활동의 경우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 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대신할 수 있다.

* 1일형 체험학습은 권장사항임

다. 학교는 필요한 경우 사전답사 등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4 1항(2024.12.20. 신설, 2025.6.20.시행)
-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라. 안전요원을 배치할 때 학생의 연령, 이동거리, 활동유형,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급(또는 이동차량)당 또는 50명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 숙박형의 경우 주·야간 구분없이 안전요원이 기준인원에 맞게 배치되어야 한다.

마. 학교는 내·외부 안전요원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단, 내·외부 안전요원만으로 배치 최소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기타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되, 학교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바.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여행업체와의 계약 시 안전요원 관련 사항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여 배치를 요구한다.

* 경기교육모아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인력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구인구직란, 크레존(www.crezone.net), 워크넷(www.work.go.kr) 등을 활용하여 외부 안전요원 확보
(※ 계약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사.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외부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실시한다.

※ 관련 외부 보조인력을 여행업체에서 채용하더라도 해당 인력은 학교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학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 경력·전력 조회를 하여야 함
 아. 외부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장 8시간(휴게시간 별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역할 부여하여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명확히 명시
 자. 외부안전요원의 경우, 교육이수증은 제출받고 외부안전요원의 신분증을 현장 확인하여 제출서류 상의 외부안전요원과 상이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도록 유의

5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로서 위원장(당연직 교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다만,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위원회의 모든 역할을 해야 하므로 충분한 숙고 및 의견 수렴 후 대체 여부 결정)

나. 위원의 구성과 운영 방법은 학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이전에 개최한다.

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동의를 결정 및 동의를 조사 결과에 따른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동의를 주의사항

- * 숙박형 체험시 활동 내용, 부담 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한 후 학생·학부모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
- * 동의율은 학교,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학습에만 해당됨
- * 동의여부 조사 시 활성화위원회에서 정한 동의를 안내하며, 동의를 확보 미달 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취소가 확정된 경우 반드시 그 이유와 경과 안내가 필요함)

6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 수익자부담경비·학교자체 예산 등으로 실시하는 학교, 학년 단위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나,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참고]

7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참고하여 <계약 연기 및 취소 등 변경요건> 관련 사항을 특수조건에 포함

8 반드시 허가·등록된 시설을 이용한다.

- 가. 숙박시설의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 단,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이용 시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 필요(최근 1년 이내)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안내

- 학교를 대신하여 지자체에서 숙박시설 및 음식점의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의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 시행 지자체 : 경주, 제주도 등(신청은 본 매뉴얼 p.72, 경기교육모아-현장체험학습 사이트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나.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거 허가등록된 수련시설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 국·공립시설에서 실시한다.

–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 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만 이용 가능

다. 수련활동 운영 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서 종합평가 결과 ‘적정’ 등급을 받고, 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인증관련 안내는 p.64~71.참고)

- ▶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등급: 적정-보완-미흡
-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 홈페이지에서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수련활동 인증·신고 여부 확인 가능

9 학생·인솔자 여행자보험은 숙박형 또는 고위험 활동 포함 시 의무로 가입하여야 한다.

가. 의무 : 숙박형과 고위험 활동[수상, 장거리건기(10km이상), 익스트림 스포츠, 운전(동력이용), 병영 체험, 동계스포츠, 놀이기구 체험 등]이 포함된 1일형 현장체험학습

나. 가)항 이외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 가입

10 사전답사는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1회 이상 실시한다.

가. 숙박형은 1회 이상 실시하고, 시기, 방법, 대상은 당해 계약 방식 및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 다만, 무리한 일정으로 사전답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유의

나. 1일형은 학교장이 안전대책 등이 확보되었다고 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사전답사 실시 여부 결정 가능(단, 고위험 활동은 생략 불가)

11 신체허약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한다.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보호 유의)

가. 수련 시설 및 위탁업체에 명단과 보호,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통보하여 안전지도 대책 수립

나. 신체허약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편의시설과 이동 동선 확인

12 미참가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미참가 학생은 「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하여 가급적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



미참가 학생관리 주의사항

- 미참가 학생에 대한 일률적인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 처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참가학생에 대해서만 내신 성적을 반영하거나 교내상 수여 등 미참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

13 인솔자 안전연수 및 학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가. 학교장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 실시

나.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시설 및 차량 이용 방법,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며, 학부모 홍보를 통해 가정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 교통수단별(버스, 선박, 항공기, 기차, 대중교통 등) 안전교육실시, 공중시설 이용 예절 및 기타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숙소 등 체험시설 상황발생 대비 행동요령(대피로 확인 등) 교육
- ▶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딥페이크 등) 예방교육
-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유해 물품을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교육
-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안전교육 실시(여행자 보험가입 적극 권장)

다.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학생 안전교육 실시

- 1) 이동 장소마다 참여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되는 학생이 없는지 확인
- 2) 특히, 선박·항공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 탈출 방법 교육 철저
※ 관련 규정: 「선원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7항
- 3) 업체의 안전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솔자는 이행 요구

14 식중독 등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가. 학교장은 필요시 사전에 관할 시·군·구(안전 및 급식위생 담당 부서)에 실시 기간, 장소(급식 장소 등)를 포함한 일정을 통보하고 위생·안전 점검 결과 조회 공문 요청

나.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소형 일반음식점 이용으로 인한 해당 시·군·구 위생 점검이 어려운 경우, 철저한 현장 확인 후 섭취하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모범음식점 등 이용]

다.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

라. 설사 등 유사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시 치료 조치를 한 후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15 학생수송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가. 전세버스 계약시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 계약

- 「교통안전법」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3(영상 기록장치의 설치 등)

나. 운수회사로부터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의 '이상없음'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추가 확인

- 운전자 적격 여부는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도 확인 가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의2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제16조 2항 2호 및 3호(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다. 계약서(배차 통보서)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 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라. 학교장은 운수회사 담당자·학교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점검표(서식참조)」를 활용하여 차량 안전 점검 및 운전자 안전 운전 당부

- 마. 운전자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 실시 요청
 - 유사시 차량 비상탈출법, 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 바. 대열운행 예방을 위해 시간차를 둔 순차적 출발과 안전거리 항시 확보, 과속 운행 예방을 위해 중간 집결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하도록 사전 협의
- 사. 교사는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확인, 휴게소 안전교육 실시, 운전자에 대한 안전 운전 요청 및 확인
- 아. 학생수송차량 입찰시 차령 제한 자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별표 2]
 -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와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16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다.

- 가.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신설 2018. 8. 14.) 및 도로교통법제159조(양벌규정)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외

- 나. 운송사업자의 음주감지 결과 확인서 미제출시 학교자체 음주감지 실시
 - 학교 자체 음주 측정 시를 대비하여 학교내 업무 분장으로 명시할 것을 권장
- 다. 운전자의 음주 확인 즉시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시 학교는 112 신고 및 운전자 교체
- 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당일을 포함한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 운행 전 음주 감지 실시



계약특수조건

-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제출 등에 대한 내용 명시
-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 명시

17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한다.

18 체험지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비상상황발생 시 행동요령교육을 실시한다.

19 인솔자는 임장지도를 의무로 한다.

- 인솔자는 교육활동 현장에서 교육내용·안전문제·학생호응도 등을 관찰하고, 안전사고 등 응급 상황에 대응(위탁교육 중 인솔자는 교육 현장 무단이탈 금지)

20 경비집행 및 정산은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하에 집행·정산한다.

- 가. 현지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경비는 임시 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
 - 품의 결재 후, 학교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는 임시출납원 임명 불필요

나. 수익자 부담 경비가 포함된 현장체험학습은 종료 후 10일 이내(토·일, 공휴일 포함)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 내역 공개

※ 환불 액수가 소액일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 복지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하다. 현장체험학습의 경비* 및 불참 학생 환불에 필요한 금액 등은 학교회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 인솔자 경비, 여비, 답사 경비, 답사에 필요한 렌트비, 여행자보험비, 보조인력 채용비 등

※ 인솔 교직원의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및 필요경비(입장료 등)는 학교 운영비에서 지출

※ 일비 외에 모든 경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업체에 일괄 송금한다.

21 현장체험학습 실시 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가. 학생·교사 대상의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후 다음 연도 운영계획 자료로 적극 활용
나. 숙박형 체험학습은 경기교육모아 사이트의 '**사전사후 정보방**' 탭에서 사전 정보 및 사후 결과 입력(숙박형 이외 체험학습은 입력하지 않음)

※ '경기교육모아-현장체험학습 사전사후방' 사이트(<https://more.goe.go.kr>) 이용 안내

- '교직원' 회원 가입 및 EPKI 로그인 후 '사전' 입력 가능

- '사후' 입력 및 수정은 '사전' 입력한 내용에서 가능

- 사후 내용(1인당 경비, 만족도) 입력 후 수정 저장 시 '사전'이 '사후'로 바뀜

22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 체험학습을 자제한다.

가. 부득이 국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현지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나. 고액 경비 및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체험학습(**동학년 국내·외 분리 체험학습 등**) 지양
다. 적정 보조인력 배치 및 인솔자의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연수 이수 적극 권장
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국외 체험학습을 위해 학교 구성원 협의하에 학교 특성 및 체험학습 상황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본 매뉴얼 P.41 참고)

23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계획 중이던 체험학습을 변경·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변경·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학부모(학생)에게 알린다.

5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 1 응급상황 발생시 현지 응급구조기관(119,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한다.
- 2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즉시 연락한다.
- 3 인명사고, 식중독, 전염병 등 보고 사안 발생 시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업무 주무부서에 유선 보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사후에 사안보고서(서식 참고)를 제출한다.(국립학교는 도교육청, 교육부 동시보고)

〈 현장체험학습 시 보고해야 하는 사고 〉

▶ 인사사고

- 사망 및 병원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증상 : 인원수 불문
- 동일 장소에서 같은 활동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체험학습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병원(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식중독 및 감염병 의심 증세

-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 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한 경우

- 4 천재지변 또는 사안(사고) 발생으로 인해 학생안전 등 체험학습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학교 구성원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하여 혼란을 최소화한다.
- 5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 시, 학교에서 병원비 등 선(先) 지급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학교 회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병원비 정산 등의 문제로 학생들이 병원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당일 치료 · 당일 퇴원의 경우에만 해당됨
- 추진 절차 : 병원 이송 및 진료 → 당일 치료 및 퇴원 → 병원비 정산(카드 결제 등 학교 선(先) 지급) → 퇴원 → 보험회사 및 학교안전공제회에 병원비 청구 → 학교회계에 병원비 반납

6 현장체험학습 관련 반부패 청렴 계획

- 1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위탁여행업체, 숙박업체, 수련업체, 운송업체 등 관련 업체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금품, 향응, 편의(교통, 숙박 등)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 2 위탁여행업체, 숙박업체, 수련업체, 운송업체 등 관련 업체와의 계약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과정상의 투명성 및 청렴도를 제고한다.
- 3 교육적 목적과 학생 안전 등을 위한 현장 체험학습 학생 인솔 및 사전답사와 관련한 모든 소요 비용은 학교 예산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학생에 대한 무료 입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계없으나 무료입장 대상 학생의 공정한 선정 방법 등은 사전 계획서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02



현장체험학습별 안전조치 안내

I. 1일형 현장체험학습

1. 1일형 현장체험학습 절차(예시)
2. 1일형 현장체험학습 세부 추진 절차(예시)

II.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절차(예시)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 추진 절차(예시)
3. 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컨설팅 방안

현장체험학습별 안전조치 안내



I 1일형 현장체험학습

1 1일형 현장체험학습 절차(예시)¹⁾

추진 단계		추진 내용
1단계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1일형 현장체험학습 학교 기본계획 수립 - 필수 포함요소 :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대책, 체험학습 안전교육 실시,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단계	시기 및 장소 안내장 발송	1차 가정통신문 발송(주제 및 장소 등 정보 안내)
3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계획 (일정 및 장소, 추정금액 적정성 여부, 안전 계획 등) (필요시) 계약 방법에 따른 심의
4단계	입찰 공고 및 제안서평가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행정실) (필요시) 제안서 평가
5단계	사전답사	- 사전답사 실시 - 학교장이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전답사 생략 가능(단, 고위험 활동은 생략 불가)
6단계	사전 업무 처리	- 자체점검표 포함 세부 실천 계획 수립 2차 가정통신문 발송 (최종 참가 인원 확정) - 위생 및 안전점검 요청(필요시) - 교직원 외 인솔자에 대한 채용 및 위촉 - 인솔자 적정 확보 및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조회 - 교과 수업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육활동 - 현장체험학습 활동 자료 준비 - 미참가자 교육계획 수립 - 비상연락체계 점검 - 현장체험학습 일정 예약 점검하기 - 인솔자 복무 처리 등

1) 위 절차는 예시이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추가하거나 순서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함

추진 단계		추진 내용
7단계	계약	•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여행자 보험가입 계약(운영위원회에서 가입 결정 시)
8단계	안전연수 및 안전교육	• 인솔자 사전 안전 연수 실시 •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 안전 교육 실시 • (해당시) 대중교통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 대책 확보
9단계	현장체험학습 운영	• 단체 차량 이용 당일 점검 • 비상연락체계 유지 •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 실시 • 인솔자 상시 임장지도 및 대규모 운영 시 보조인력 배치 권장 •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보고
10단계	경비집행 및 정산	• (경비집행) 회계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경비 집행 • 수익자 부담 경비 집행 내역 공개 - (정산)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 (공개)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 추진 내역 학교홈페이지 공개
11단계	결과 활용	•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사후 교육활동(권장) • 자체 평가(만족도 조사 등) 및 차년도 결과 활용

2 1일형 현장체험학습 세부 추진 절차(예시)

🔍 1단계 :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 1일형 현장체험학습 학교 기본계획 수립
 - 필수 포함요소 :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대책, 안전교육 실시,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학교는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
 - 대규모 운영시 소규모 형태의 운영 방안 및 안전대책 수립
- ▶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 ▶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 지역 지양 방안
- ▶ 학생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학생 안전대책 방안
-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방안
- ▶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2단계 : 시기 및 장소 안내장 발송

- 1차 가정통신문 발송(주제 및 장소 등 정보 안내)

- 학부모에게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소별 예정 가격, 프로그램(체험내용), 일정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3단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계획(일정 및 장소, 추정금액 적정성 여부, 안전 계획 등)
 - (필요시) 계약 방법에 따른 심의

🔍 4단계 :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행정실)
- (필요시) 제안서 평가

- 1) 필요시 추정금액에 따라 입찰 공고를 하여 제안서를 접수한다.
- 2) 제안서를 평가한다.

5단계 : 사전답사

- 사전답사 실시
 - 학교장이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전답사 생략 가능(단, 고위험 활동은 생략 불가)

- 1) 실제 행사 당일에 참여하는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 중심으로 실시한다.
- 2) 사전답사는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일형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점검 항목 참조〉

- ▶ 실시경로·예정지와 체험 활동의 교육목적 부합 여부
- ▶ 거리, 소요시간, 시설(식당 포함)의 수용 인원 및 안전위생 상태
- ▶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 ▶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 3) 답사 중 또는 답사 실시 전후에 관련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향응 기타 편의 사항을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공무원행동강령」등 관련 규정 준수)

6단계 : 사전 업무 처리

- 자체점검표 포함 세부 실천 계획 수립
- 2차 가정통신문 발송(최종 참가 인원 확정)
- 위생/안전점검 요청(필요시)
- 교직원 외 인솔자에 대한 채용 및 위촉
- 인솔자 적정 확보 및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조회
- 교과 수업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육활동
- 현장체험학습 활동 자료 준비
- 미참가자 교육계획 수립
- 비상연락체계 점검
- 현장체험학습 일정 예약 점검하기
- 인솔자 복무 처리 등

- 1) 자체점검표를 포함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한다. (서식 참고)
- 2) 2차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하여 현장체험학습 세부 안내 및 개인별 최종 참가 동의 및 참가 인원을 확정한다.
 - 인솔자 없이 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에티켓 교육을 실시하고 가능한 출퇴근 시간 혼잡 상황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다중 밀집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
- 3) 학생 수송버스 운전자 음주 감지 방안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제출하도록 계약시 포함

- 출발 당일 운송사업자의 음주감지 결과 확인서 미제출시 학교 자체 음주감지기 실시
 - 학교 자체 음주 측정 시를 대비하여 학교내 업무 분장으로 명시할 것을 권장
 - 음주 확인 시 즉시 112신고 조치 및 운전자 교체
- 4) 교직원 외 인솔자에 대한 채용 및 위촉에 소요되는 경비(여비)는 학교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한다.
- 5) 인솔자 적정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 학급당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함을 권장하나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급당 1명이 인솔
 - ※ 학급당 1명이 인솔할 경우 교사가 인솔해야 함
- 6)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교육자료(현장체험학습 정보, 안전교육) 등을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한다.
- 학부모 홍보(가정통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
- 7) 현장체험학습은 (출석)수업 기간 중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므로 대상 학생 전원이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질병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불참할 수 있으므로 미참가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불참 학생에 대한 일률적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시행 및 결석 처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참가 학생에 대해서만 내신 성적을 반영하거나 교내상 수여 등을 하여 불참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불참 학생은 저소득층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프로그램 활용하거나 학교운영비를 편성하여 가급적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
- 8) 현장체험학습 전 학생 및 학부모와 인솔자에 대한 휴대폰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학교에서 관리한다.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
- 9) 인솔자에 대한 복무처리를 실시한다.

🔍 7단계 : 계약(숙박형 체험학습 세부추진 절차(예시) 부분 참조)

🔍 8 단계 : 안전연수 및 안전교육

- 인솔자 사전 안전 연수 실시
-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 안전 교육 실시
- (해당시) 대중교통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 대책 확보

- 1) 학교장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 2)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시설 및 차량 이용 방법,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 ▶ 교통수단별 안전교육(버스, 선박, 항공기, 기차, 대중교통 등), 공중시설 이용예절 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숙소 등 체험시설 상황발생 대비 행동요령(대피로 확인 등) 교육
- ▶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딥페이크 등) 예방교육
-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유해 물품을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교육
-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관련 안전교육 실시(여행자 보험가입 적극 권장)

- '경기교육모아-현장체험학습-교육자료방' 사이트 참고·활용

3) 대중교통을 이용한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한다.

- 2명 이상이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모둠 편성 권장
-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교통예절 및 다중 밀집상황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인솔교사는 학생 귀가 전 '귀가 안전교육'을 실시
- 안전한 귀가 확인을 위해 문자 전송 등 확인 방법 권장
- 대중교통을 개별로 이용하는 체험학습의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 적극 권장
- 가급적 출·퇴근시간 등의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이동하도록 계획

9단계 : 현장체험학습 운영

- 단체 차량 이용 당일 점검
- 비상연락체계 유지
-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 실시
- 인솔자 상시 임장지도 및 대규모 운영 시 보조인력 배치 권장
-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보고

1) 단체 차량 이용 점검을 실시한다.

- 운행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
 - * 운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확인(종합의견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 추가 확인)
 - * 계약서(통보서)의 자동차 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 *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 자격증명'으로도 확인 가능하나 가급적 계약서(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비교, 확인할 것
- 출발 전 학교장은 학교 담당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점검표(서식참고)」등을 활용하여 차량점검 실시
-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확인
 - * 관련 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
 - * 운송사업자의 음주감지 결과 확인서 미제출시 학교자체 음주감지 실시
 - * 운전자의 음주 확인 즉시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시 학교는 112 신고 및 운전자 교체



계약특수조건

-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제출 등에 대한 내용 명시
-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 명시

- 대열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일정 시간(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출발·운행하도록 사전 협의
 - 운전자의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유사시 차량 비상탈출 방법, 안전벨트 및 차량 내 소화기 사용법,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 인솔자는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확인, 운전자에 대한 안전 운전 확인
- 2)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한다.
- 체험학습 참여 학생·학부모 및 인솔자 비상연락처 확보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
 - 사안 발생 즉시 구호조치 신고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에게 피해 상황 보고
- 3) 체험학습 진행 시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프로그램 담당자는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교육
 - * 학교 자체 계획 또는 수련기관 및 위탁업체와 협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4) 신체 허약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한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은 수련 시설 및 위탁업체에 명단과 보호,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통보하여 안전지도 대책을 수립(개인정보보호에 유의)
 - 현장체험학습 출발 당일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복통, 장염, 미열, 감기, 컨디션 난조 등)이 있을 경우 학생, 학부모의 동의하에 체험학습에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음
- 5) 인솔자는 학급당(참여 학생 25명 기준) 2명 이상 확보를 권장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외부) 등을 활용한다.(학급당 1명 인솔시 교사가 인솔)
- 인솔자는 인솔교사, 안전요원(내부, 외부), 기타보조인력 등을 포함하는 총 인원수
- 6)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중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청소년지도사·문화해설사·큐레이터 등 전문교육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 인솔자는 교육활동 현장에서 교육내용·안전문제·학생호응도 등을 관찰하고, 안전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응(위탁교육 중 인솔자는 교육현장 이탈 금지)
- 7) 비상시에 대비한 상비약품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이동·체험활동 장소의 각종 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8)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생활지도 및 학생 안전교육 매뉴얼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이동 장소마다 참여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 학생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합한 생활지도 실시
 - 특히 선박·항공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탈출 방법 교육

- * 비상신호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피난요령, 구명기구 사용법 등을 의무적으로 여객에게 출항 후 1시간 이내 안내(「선원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업체에서의 안전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솔자는 반드시 이행을 요구

9) 해양 수상 활동, 갯벌 체험, 산행, 캠핑(야영), 전시·공연 관람, 겨울철 야외활동 계획 시 사전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서식 참고)

〈 해양 수상 활동 사전 확인 〉

- ▶ 해양경찰서장, 시·군·구에 등록 업체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적정 배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 ▶ 학생 교육 시 활용할 수상레저기구(「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등의 등록여부 확인
- ▶ 인증 프로그램 수련활동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제35조)

10) 식중독 등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곳을 선정
 - * 학교장은 사전에 필요시 관할 시·군·구(안전 및 급식위생 담당 부서)에 실시 기간, 장소(급식 장소)를 포함한 일정을 통보하고 위생·안전 점검 결과 조회 공문 요청
 - *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으로 소형 일반음식점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시·군·구의 인력 운용상 위생 점검이 어려운 경우 음식 위생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 후 섭취토록 지도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
- 동일 원인(동일 음식)으로 추정되는 구토, 복통, 설사 등 유사 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할 경우 치료 조치를 한 후 인솔책임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11)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한다.

- 비상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 * 사안 발생 즉시 구조 신고 후 구조작업 실시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
- 체험학습 시 발생한 사안(고) 인지 즉시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유선보고 하고, 사안보고서(서식 참고)를 제출
- 체험학습 사안발생 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주관부서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처

〈 현장체험학습 관련 보고해야 하는 사고 〉

- ▶ 인사사고
 - 사망 및 병원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증상 : 인원수 불문
 - 동일 장소에서 같은 활동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체험학습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 ▶ 식중독 및 감염병 의심 증세
 -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 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한 경우

대상별 사안 발생 시 대응 체계

학생	▶ 응급상황 발생 시 교사 및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 응급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119(혹은 경찰서)에 신고
인솔교사	▶ 환자 상태 관찰, 신속한 응급 처치, 의료기관 이송 여부 결정 (상태가 중한 경우 응급처치 후 즉시 119 연락 또는 이송 차량을 확보하여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 ▶ 인솔교사는 보호자에게 상세히 연락 ▶ 응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
학교장 및 관리자	▶ 교육지원청에 사고 경위 보고 ▶ 환자 병문안 등 치료를 위한 지원 ▶ 사후대책 추진 시 학교 창구 일원화 초·중·고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주간: 820-0685~7 야간: 820-0514, 0524 → 교육부 ※ 국립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련 부서에 동시 보고 ※ 야간은 당직 책임자가 보고책임자의 임무 수행
행정사항	▶ 보고해야 하는 사고인 경우 사안보고서 작성 후 교육지원청 공문 보고 ▶ 진료결과를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의 경우 업무 담당자가 보상 신청

※ 응급환자 이송계획 수립 시 위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학교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의료기관이나 이송 담당교사 지정 및 운영

🔍 10단계 : 경비 집행 및 정산(숙박형 체험학습 세부추진 절차(예시) 부분 참조)

🔍 11단계 : 결과 활용

-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사후 교육활동(권장)
- 자체 평가(만족도 조사 등) 및 차년도 결과 활용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MEMO



02

현장체험학습별 안전조치 안내

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절차(예시)2)

추진 단계		추진 내용
1단계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 안전 필수 포함 요소 :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대책,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실시,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2단계	동의를 확보	- 기본계획 심의(활성화위원회) - 동의 비율 기준 설정(활성화위원회) 1차 가정통신문 발송(자체동의 비율 반드시 안내) - 결과 취합 및 학부모(학생) 동의율 산출 - 동의율 산출에 따른 체험학습 시행 여부 심의(활성화위원회) -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역할 대체 가능
3단계	현장체험학습 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계획 (일정 및 장소, 추정금액 적정성 여부, 안전 계획 등) - 계약 방법에 따른 심의
4단계	입찰 공고 및 제안서평가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행정실) - 제안서 평가(활성화위원회)
5단계	1차 사전답사	- 제안서 등 답사 자료 준비, 사전답사 시행 - 사전답사는 반드시 1회 이상 실시(시기나 횟수는 학교 자율적 판단)
6단계	사전 업무 처리	- 자체점검표 포함 세부실천계획 수립 2차 가정통신문 발송(최종 참가인원 확정) - 위생 점검 및 운전기사 음주측정 등 교통안전대책 강구 - 인솔자 적정 확보 - 교직원 외 인솔자에 채용 및 위촉 - 교과 수업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육활동 - 미참가자 교육계획 수립 - 현장체험학습 활동 자료 준비 - 비상연락체계 점검 - 현장체험학습 일정 예약 점검하기 - 인솔자 복무 처리 등

2) 위 순서는 예시 사항이며 학교 실정에 따라 순서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추진 단계		추진 내용
7단계	계약	•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인솔자, 참여 학생 여행자 보험 가입 • 외부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 고용 계약(필요시)
8단계	세부계획서 교육지원청 제출 및 컨설팅	• 대규모 운영시 세부계획서 및 자체 점검표 교육지원청 제출(안전대책 수립 후) •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 컨설팅 실시 (국외 현장체험학습은 규모에 관계없이 관련서류 제출 및 컨설팅 대상임) • 교육지원청 컨설팅 결과 환류 • 컨설팅 결과 환류 내용 세부계획에 보완 반영
9단계	2차 사전답사	• 시행 직전 2차 사전답사 실시(필요시) • 사전답사 1회 이상 의무이므로 사전 사전 답사 시기 및 횟수 조정 가능
10단계	안전연수 및 안전교육	• 인솔자 사전 안전 연수 실시 •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 사전 안전 교육 실시 • ‘경기교육모아-현장체험학습-사전사후 정보방’ 공개(숙박형 의무사항)
11단계	현장체험학습 운영	• 단체 차량 이용 당일 점검 • 비상연락체계 유지 •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 출발에서 도착시까지 상시 인원 점검 •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보고 • 인솔자 상시 임장지도 및 안전요원 배치
12단계	경비집행 및 정산	• (경비집행) 회계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경비 집행 • 수익자 부담 경비 집행 내역 공개 - (정산)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 (공개)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 추진 내역 학교홈페이지 공개
13단계	자체 평가	• 자체 평가회 실시 • 학생,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14단계	실시 과정 및 평가 결과 탑재	• 운영 결과 공개(종료 후 20일 이내) - ‘경기교육모아-현장체험학습-사전사후 정보방’ 탑재 • 체험학습과 관련된 사후 교육활동(권장)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 추진 절차(예시)

1단계 :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 필수 포함 요소 :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대책, 안전교육 실시,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1) 학교는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 소규모 체험학습 운영 방안(대규모 운영 시 소규모 형태의 운영 방안 및 안전대책 수립)
- ▶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 ▶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 지역 지양 방안
- ▶ 학생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학생 안전대책 방안
-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방안
- ▶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 구성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이하 “활성화위원회”라 한다)위원은 위원장(당연직 교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학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심의 사항
 - 숙박형 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기본계획 검토
 - * 대상이 전교생 또는 학년 전체인 경우 숙박형 체험학습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동의를 결정 및 동의를 조사 결과에 따른 실시 여부 결정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시 답사단 구성 및 시행
 -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답사를 생략할 경우에만 안전대책 여부를 심의함.
(학교장이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경우)
 - 계약 관련 경쟁 입찰 진행시 제안서 평가

2단계 : 동의율 확보

- 기본계획 심의(활성화위원회)
- 동의 비율 기준 설정(활성화위원회)
- 1차 가정통신문 발송(자체동의 비율 반드시 안내)
- 결과 취합 및 학부모(학생) 동의율 산출
- 동의율 산출에 따른 체험학습 시행 여부 심의(활성화위원회)
 -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역할 대체 가능

- 1)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에 대한 학부모(학생) 동의 비율은 '활성화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동의 비율은 학교 전체, 학년 전체 등 전체 학생 참여를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에만 해당되며 미참가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필요
 - 일부 학생만 선택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하는 학부모(학생) 전원 동의로 진행함 (일부 학생만 참여하는 경우는 활성화위원회 구성·심의 대상이 아님)
 - 조사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소별 예정가격, 식사, 프로그램(체험내용), 숙소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동의율 확보 대상 아님)
- 2) 동의 여부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조사하며 반드시 학교에서 정한 동의 비율을 안내해야 한다.
 - 특히 동의율 확보 미달 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 변경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함
- 3) 학교에서 정한 동의율에 미달할 경우 계획서를 변경하고 동의율 기준을 재설정할지 여부나 현장 체험학습 자체를 취소할지 여부를 활성화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
 - 취소가 확정된 경우 반드시 안내장을 통해 그 동안의 경과를 안내함
- 4) 자유로운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제출받으며 강압적 참여 유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개인정보보호방법 강구)
- 5)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체한다.



동의율 관련 주의사항

- 수익자 부담의 교육활동이므로 활동 내용, 부담 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한 후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
- 고액 경비 및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현장체험학습 및 동학년내 국내·외 분리 현장체험학습은 지양한다.
- 국외 현장체험학습(전체 학생 대상)은 학년 전체 학부모(학생)의 9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

3단계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계획(일정 및 장소, 추정금액 적정성 여부, 안전 계획 등)
 - 계약 방법에 따른 심의

4단계 :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행정실)
- 제안서 평가(활성화위원회)

5단계 : 1차 사전답사

- 제안서 등 답사 자료 준비, 사전답사 시행
- 사전답사는 반드시 1회 이상 실시(시기나 횟수는 학교 자율적 판단)

-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사전 사전답사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2) 계약 전 또는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사전 답사를 실시하되 시기, 방법, 대상 등은 당해 계약 방식 및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다만, 무리한 일정으로 사전답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 3) 사전답사는 실제 행사 당일에 참여하는 인솔교원 및 보조인력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 규모에 따라 답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4) 사전 답사는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안전점검 항목표 참조〉

- ▶ 실시경로·예정지와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의 교육목적 부합 여부
- ▶ 거리, 소요시간, 시설(식당 포함)의 수용 인원 및 안전위생 상태
- ▶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 ▶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 5) 국외 체험학습 사전 답사를 2회 이상 실시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진, 동영상 등으로 점검할 수 있다.
- 6) 답사 결과를 활성화위원회에 보고한다.
- 7) 답사 중 또는 답사 실시 전후에 관련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향응 기타 편의 사항을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공무원 행동 강령 등 관련 규정 준수)

〈 공무원 행동 강령 등 관련 규정 준수 〉

- ▶ 학교의 교직원이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여행사 등으로부터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됨
- ▶ ‘팸투어’의 경우에 교통이나 숙박 등의 편의 제공은 공무원 행동 강령 제14조1항 3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향응’에 해당
 - 팸투어(Fam Tour) : 지자체나 항공사 등이 관광상품 마케팅, 특정 관광단지 홍보를 위해 관련자, 유관인사 등을 초청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는 것

6단계 : 사전 업무 처리

- 자체점검표 포함 세부실천계획 수립
- 2차 가정통신문 발송(최종 참가 인원 확정)
- 위생 점검 및 운전기사 음주측정 등 교통안전대책 강구
- 인솔자 적정 확보
- 교직원 외 인솔자에 대한 채용 및 위촉
- 교과 수업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육활동
- 미참가자 교육계획 수립
- 현장체험학습 활동 자료 준비
- 비상연락체계 점검
- 현장체험학습 일정 예약 점검하기
- 인솔자 복무 처리 등

- 1) 자체 점검표(서식 참고)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작성한다.
(대규모 운영 시 결재 직후 세부계획서 및 자체점검표 교육지원청 제출)
- 2) 2차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현장체험학습 세부 안내 및 개인별 최종 참가 동의 및 인원을 확정한다.
- 3) 학생 수송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제출하도록 계약시 포함
 - 출발 당일 운송사업자의 음주감지 결과 확인서 미제출시 학교 자체 음주감지기 실시
 - 학교 자체 음주 측정 시를 대비하여 사전 학교내 업무 분장으로 명시할 것을 권장
 -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 당일을 포함한 체험학습 기간 동안 차량 운행 전 음주 감지 실시
- 4) 인솔자 적정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 학급당 2명 또는 참여 학생 25명 기준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함을 권장하나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급당(참여 학생 25명 당) 인솔 교사 1명이 인솔 가능
- 5) 현장체험학습 예산(인솔교직원 경비, 여비, 답사경비, 답사에 필요한 렌트비, 여행자 보험 등) 및 불참학생 환불에 필요한 금액 등은 학교회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 6) 교직원 외 인솔자에 대한 채용 및 위촉
 - 보조인력에 대한 채용 및 위촉에 소요되는 경비(여비)는 학교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한다.(기간제교사, 명예교사가 인솔자인 경우는 여행자 안심공제 또는 여행자 보험 가입 권장)
- 7) 현장체험학습 전 학생, 인솔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학교에서 관리한다.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즉시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
- 8) 현장체험학습은 출석수업 기간 중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므로 대상 학생 전원이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질병 등 개인사정에 따라 불참할 수 있으므로 미참가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미참가 학생에 대한 일률적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및 결석 처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참가학생에 대해서만 내신 성적을 반영하거나 교내상 수여와 같이 미참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불참 학생은 저소득층자녀 기타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학교운영비를 편성하여 가급적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9) 인솔자에 대한 복무처리를 실시한다.

7단계 : 계약

-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인솔자 및 참여 학생 여행자 보험 가입
- 외부보조인력, 기타보조인력 고용 계약(필요시)

1) 계약 업무 흐름도(예시)

1	사업계획 수립	■ 계획 수립,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작성
2	예산집행 수립	■ 사업부서 품의 요구, 기초금액(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견적가격) 작성
3	계약방법 결정	■ 1인 견적 제출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제출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입찰 : 금액 상관없이 가능(추정가격 1억원 초과시 반드시 입찰)
4	공고	■ 공고서 작성(수의계약 안내 공고, 입찰공고 등) ■ 입찰 공고 : 7일~10일(단, 2단계 입찰 : 10일 이상) ■ 긴급공고 또는 재공고 : 5일(단, 2단계 입찰 10일 이상) ■ 수의계약 안내 공고 : 3일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5	개찰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낙찰하한율 90%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낙찰하한율 88% ■ 일반(제한) 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 ■ 2단계 입찰 : 제안서 적격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6	계약 체결	■ 계약보증금(10%), 인지세(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7	착수	■ 착수신고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 등
8	선금 지급	■ 채권 확보(선금 보증서)
	(해당시) 과업내용 변경 등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물가 변동, 그 밖의 계약변경 ■ 계약금액 증액 시 계약보증금, 인지세 등 추가 납부
9	용역 완료	■ 완료서류 확인(완료계), 정산서(필요시)
10	용역 완료 심사	■ 완료검사원, 검사(완료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11	대가 지급	■ 청구서 접수 후 5일 이내(초일불산입,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G2B 확인 가능], 수의계약 시 생략 가능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최신 법령 및 경기도교육청 계약 관련 지침을 확인하여 추진

2) 계약 방법

계약 방법		내 용		금액 기준
수의 계약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기 견적서에 의해 계약 가능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용역 계약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에 의한 견적서 제출 공고 후 계약상대자 결정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용역 계약
입찰	일반(제한) 입찰		▪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중소기업, 재무상태, 실적 등으로 제한할 경우 제한 입찰	※ 금액 상관없이 가능 (추정가격 1억원 초과시 반드시 입찰)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 규격·기술 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 실시 * 규격 적합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때 가격 개찰 실시	
		규격·가격 동시	▪ 규격·기술 입찰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가격입찰 실시 * 규격 적합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가격 개찰 실시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 체결	
조달청 카탈로그 계약	2,000만원 미만		1인	수요기관 예산 기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인 이상	상동
	5,000만원 이상		▪ 5인 이상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서 송부 후 평가하여 업체 선정 ▪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음	상동

3) 계약 시 유의사항

- 계약의 원칙은 일반입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실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특정업체와의 계약(수의계약)을 위한 편법적 분할계약 금지
 -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1절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방식에 따른 수의계약은 지역·실적 등 중복제한 가능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 ‘일반(제한)입찰’ 방식은 중복제한 불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예) 실적제한+지역제한 불가
- 추정가격은 인솔자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4) 계약 시 필수 반영 사항(여행, 숙박·식당업체 공통사항)

-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명시
-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과 책임의 소재, 책임의 범위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
 - ※ 위탁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탁계약자가 책임진다는 내용 기재

〈 수련활동 계약 시 유의사항 예시 〉

- 수련활동 계약은 운송업체 · 수련업체로 계약
 - ※ 무허가 중간알선업자, 이벤트회사 등과 계약은 금지
- 학생들이 실제로 숙박하는 장소의 수련업체와 계약
 - 콘도에서 숙박하면서 유스호스텔과 계약하는 것은 금지
- 학교의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패키지 형태)는 반드시 프로그램 인증 여부 확인
- 수련활동 위탁 시 재위탁 여부 및 프로그램 인증 여부 확인
 - ※ 인증번호, 프로그램명, 기관명, 대표자명, 유효기간

- 여행업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국내·외 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참조하여 계약서 작성
- 학생·인솔자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및 업체의 영업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가급적 학교예산으로 편성하여 보험 가입
 - (※ 근거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제3조1항)

〈 여행자 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

▶ 여행자 안심공제 또는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 대상활동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및 1일형 현장체험학습 중 **고위험 활동(수상·장거리도보(10km이상)·익스트림 스포츠·운전(동력이용)활동·병영체험·동계스포츠활동·놀이기구체험 등)**
- 가입인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를 모두 포함하여 가입
 - * 상해(질병)로 인한 사망, 후유 장애 등 정액 지급이 가능한 보험 위주로 가입
 - * 특히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후유장애, 입원의료비, 배상책임, 치료비, 외래의료비 등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위주로 가입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구분	보험종류
차량	자동차종합보험
수련시설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8천만원 이상, 사고당 무한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숙식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 구체적인 계약 방법별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은 [부록] 참조

8단계 : 세부계획서 교육지원청 제출 및 컨설팅

- 대규모 운영시 **세부계획서** 및 **자체 점검표** 교육지원청 제출(안전대책 수립 후)
-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 컨설팅 실시
(국외 체험학습은 규모에 관계없이 관련서류 제출 및 컨설팅 대상임)
- 교육지원청 컨설팅 결과 환류
- 컨설팅 결과 환류 내용 세부계획에 보완 반영

-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운영 규모는 3학급 이하 또는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단위로 운영함을 기본으로 한다.
(4학급 이상 그리고 100명 이상 시행할 경우 세부계획서 및 체험학습 자체점검표 등 안전 대책 수립 후 교육지원청에 제출)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같이 여러 곳을 방문하는 형태의 대규모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는 관련서류 제출 후 **교육지원청의 컨설팅 실시 대상이며**, 컨설팅 일정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한다.
(단, 수련활동과 같이 한 곳에 머무르는 대규모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는 세부계획서 및 자체점검표만 제출, 교육지원청 컨설팅 대상이 아니지만 서류 검토 후 필요시 또는 학교의 요청 등에 의해 실시할 수 있음)
- 2) 소규모 체험학습의 경우 단위학교별 '자체점검표'를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한 뒤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 3) 대규모 인원이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서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숙소에서만 대규모로 숙박하는 경우 보조인력 배치 등을 포함하는 안전 조치를 한 경우 컨설팅 대상은 아니나 숙소에서 대규모 활동(레크레이션 등)이 계획된 경우 교육지원청 컨설팅 대상이 된다.

| 세부계획서와 자체점검표 제출 대상 및 컨설팅 대상 구분 |

체험 구분	규모	소규모	대규모	비고
1일형 체험학습		제출×, 컨설팅×	제출×, 컨설팅×	
수련활동		제출×, 컨설팅×	제출○, 컨설팅×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제출×, 컨설팅×	제출○, 컨설팅○	
국외 체험학습		제출○, 컨설팅○	제출○, 컨설팅○	

🔍 9단계 : 2차 사전답사

- 시행 직전 2차 사전답사 실시(필요시)
- **사전답사 1회 이상 의무이므로** 사전답사 시기 및 횟수 조정 가능

- 1) 숙박형 체험학습은 사전답사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2) 계약 전 또는 체험학습 실시 전 사전답사를 실시하되 시기, 방법, 대상 등은 당해 계약 방식 및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 3) 사전답사는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안전점검 항목표 참조〉

- ▶ 실시경로·예정지와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의 교육목적 부합 여부
- ▶ 거리, 소요시간, 시설(식당 포함)의 수용 인원 및 안전위생 상태
- ▶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 ▶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 4) 답사 중 또는 답사 실시 전후에 관련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향응 기타 편의사항을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공무원행동강령」등 관련 규정 준수)
- 5) 국외 체험학습 사전 답사를 2회 이상 실시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진, 동영상 등으로 점검할 수 있다.

🔍 10단계 : 안전연수 및 안전교육

- 인솔자 사전 안전 연수 실시
-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 사전 안전 교육 실시
- '경기교육모아-현장체험학습-사전사후 정보방'에 공개(의무사항)

- 1) 학교장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 2)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시설 및 차량 이용방법,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 ▶ 교통수단별(버스, 선박, 항공기, 기차, 대중교통 등) 안전교육 실시, 공중시설 이용예절, 기타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숙소 등 체험시설 상황발생 대비 행동요령(대피로 확인 등) 교육
- ▶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딥페이크 등) 예방교육
-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유해 물품을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교육
-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안전교육 실시(여행자 보험가입 적극 권장)

- '경기교육모아-현장체험학습-교육자료방' 사이트 참고·활용
- 학교급 형태에 맞게 편집·수정 인쇄하여 활용 가능
-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실시

- 3)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경기교육모아-현장체험학습-사전사후정보방' 공개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전교생 또는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박형 체험 학습만 입력할 것(소규모 운영으로 학급별 체험장소 및 기간이 다른 경우 통합하여 작성요망)

항목	입력내용	항목	입력내용
체험학습명	0학년 00체험활동	학교명	정식명칭입력
학교급	초,중,고	지역	소속 교육지원청 입력
활동구분	수학여행/수련활동/기타	실시기간	~
대상학년	1, 2 (해당학년 숫자 입력)	재적/참가인원	000명(재적생수) /000명(참가학생수)
주요행선지	행선지 1~2곳 입력 수련활동은 수련시설명	학생1인당경비	사후입력 1인당 평균 경비(단위:원)
학부모동의율	%	계약방법	입찰/수의계약/기타
운송업체명	00관광	숙박업소명	00콘도
이동수단	00인승 단체버스 및 항공기	학생만족도결과 (%)	사후입력 100(숫자만 입력)
운영규모	대규모/소규모	비고	소규모 운영 사항 간략 기재

Q 11단계 : 현장체험학습 운영

- 단체 차량 이용 당일 점검
- 비상연락체계 유지
-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 출발에서 도착시까지 상시 인원 점검
- 인솔자 상시 임장지도 및 안전요원 배치
-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보고

1) 단체 차량 이용 점검을 실시한다.

- 운행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
 - * 운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를 확인(종합의견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추가 확인)
 - * 계약서(통보서)의 자동차 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 *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 자격증명'으로도 확인 가능하나 가급적 계약서(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것
- 출발 전 학교장은 학교담당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점검표(서식참고)」 등을 활용하여 차량 점검 실시
-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자체 음주검지기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후 출발(음주가 확인될 경우 즉시 운전자 교체 및 112에 신고)
- 대열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일정시간(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출발·운행하도록 사전 협의
- 운전자의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유사시 차량 비상탈출 방법, 안전벨트 및 차량 내 소화기, 탈출용 망치 사용법) 확인 및 이행 요구
- 인솔자는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확인, 운전자의 안전 운전 확인

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시 안전요원 상시 배치한다.

- 안전요원을 학생 50명당 1명씩 배치
- 외부보조인력 또는 안전요원 연수 이수 교원 활용
(단, 안전요원 직무연수 이수 교사가 인솔자일 경우 별도의 안전요원 없이 인솔자를 겸하여 안전요원 역할을 할 수 있음)
-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의 안전 및 인솔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 시 응급구조 등의 업무 수행

3)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한다.

-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학부모 및 인솔자 비상연락처 확보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연락
- 사안 발생 즉시 구호조치와 신고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피해 상황 보고

4)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프로그램 담당교사는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
 - * 학교 자체계획 또는 수련기관 및 위탁업체와 협의를 통해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수련활동 안내사항

- 수련활동 프로그램 시작 전 청소년수련지도사에 의해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 대규모 수련활동의 경우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보조인력을 대신한다.

- 5) 신체허약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한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은 수련 시설 및 위탁업체에 명단과 보호,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통보하여 안전지도 대책 수립(개인정보보호에 유의)
 - 현장체험학습 출발 당일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복통, 장염, 미열, 감기, 컨디션 난조 등)이 있을 경우 학생, 학부모의 동의하에 체험학습에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음
- 6) 인솔자는 학급당 2명 이상 확보를 권장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교직원, 내외부 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 등을 활용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급당 1명 인솔할 경우 교사가 인솔
 - 인솔자는 인솔 교직원, 내·외부 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 등을 포함하는 총 인원수
- 7)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중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청소년지도사·문화해설사·큐레이터 등 전문 교육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 위탁교육 시에도 인솔자가 반드시 입장하여 교육활동 실시
 - 인솔자는 교육활동 현장에서 교육내용·안전문제·학생호응도 등을 관찰하고, 안전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응(위탁교육 중 인솔자는 교육현장 무단이탈 금지)
- 8) 비상시에 대비한 상비약품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이동·체험활동 장소의 각종 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9)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생활지도 및 학생 안전교육 매뉴얼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이동 장소마다 참여 인원을 파악하여 나오되는 학생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합한 생활지도를 실시
 - 특히 선박·항공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탈출방법 교육
 - * 비상신호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피난요령, 구명기구 사용법 등을 의무적으로 여객에게 출항 후 1시간 이내 안내(「선원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업체에서의 안전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솔자는 이행 요구
- 10) 해양 수상 활동, 갯벌체험, 산행, 캠핑(야영), 전시·공연 관람, 겨울철 야외활동 계획시 사전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 해양 수상 활동 사전 확인 〉

- ▶ 해양경찰서장, 시·군·구에 등록 업체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적정 배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 ▶ 학생 교육 시 활용할 수상레저기구(「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등의 등록여부 확인
- ▶ **인증 프로그램** 수련활동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제35조)

11) 식중독 등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곳을 선정
 - * 학교장은 필요시 사전에 관할 사군구(안전 및 급식위생 담당 부서)에 실시 기간, 실시 장소 (급식 장소)를 포함한 일정을 통보하고 위생·안전 점검 결과조회 공문 요청
 - *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으로 소형 일반음식점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사군구의 인력 운용상 위생 점검이 어려운 경우 음식위생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 후 섭취토록 지도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모범음식점 등 이용)
-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 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
- 동일 원인(동일 음식)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유사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할 경우 치료 조치를 한 후 인솔책임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12)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 비상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 요청
 - * 사안 발생 즉시 구조 신고 후 구조 작업 실시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SNS(문자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연락
-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한 사안(고) 인지 즉시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유선 보고하고, 사안보고서(서식 참조)를 제출
- 현장체험학습 사안발생 시「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종합계획」에 따라 학교,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처

대상별 사안 발생 시 대응 체계

학생	▶ 응급상황 발생 시 교사 및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 응급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119(혹은 경찰서)에 신고 ▶ 해외의 경우, 해당 지역 한국 대사관, 영사콜센터 등에 협조 요청 (각국 응급전화 : 미국 911, 일본 및 대만 119, 중국 120)
인솔교사	▶ 환자 상태 관찰, 신속한 응급 처치, 의료기관 이송 여부 결정 (상태가 중한 경우 응급처치 후 즉시 119 연락 또는 이송 차량을 확보하여 전문 의료 기관으로 이송) ▶ 인솔교사는 보호자에게 상세히 연락 ▶ 응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
학교장 및 관리자	▶ 교육지원청에 사고 경위 보고 ▶ 환자 병문안 등 치료를 위한 지원 ▶ 사후대책 추진 시 학교 창구 일원화 초·중·고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주간: 820-0685~7 야간: 820-0514, 0524 → 교육부 ※ 국립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련 부서에 동시 보고 ※ 야간은 당직 책임자가 보고책임자의 임무 수행
행정사항	▶ 보고해야 하는 사고인 경우 사안보고서 작성 후 교육지원청 공문 보고 ▶ 진료결과를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의 경우 업무 담당자가 보상 신청

※ 응급환자 이송계획 수립 시 위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학교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의료기관이나 이송 담당교사 지정 및 운영

〈 현장체험학습 관련 보고해야 하는 사고 〉

- ▶ 인사사고
 - 사망 및 병원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상 : 인원수 불문
 - 동일 장소에서 같은 활동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체험학습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병원(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 ▶ 식중독 및 감염병 의심 증세
 -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 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한 경우

12단계 : 경비 집행 및 정산

- (경비집행) 회계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경비 집행
- 수익자 부담 경비 집행 내역 공개
 - (정산)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 (공개)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추진 내역 학교홈페이지 공개

- 1) 경비 집행 및 정산은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하에 집행·정산한다.
- 2) 현지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경비는 임시 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한다.(품의 결재 후,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는 임시출납원 임명 불필요)
- 3) 수익자부담경비가 포함된 현장체험학습은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토·일, 공휴일 포함)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정산 내역 공개한다.
- 4) 현장체험학습의 경비* 및 불참 학생 환불에 필요한 금액 등은 학교회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 인솔자 경비, 여비, 답사 경비, 답사에 필요한 렌트비, 여행자보험비, 보조인력 채용비 등

- ※ 인솔 교직원의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및 필요경비(입장료 등)는 학교 운영비에서 지출
- ※ 일비 외에 모든 경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업체에 일괄 송금한다.

- 5) 여비의 지급 방법, 대상 및 절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정한다.
 - 6) 인솔교사 및 내부안전요원은 활동 실시 전에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7) 인솔교사 및 내부안전요원은 야간 생활지도 근무조를 편성하도록 하고, 그 초과근무 시간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 국외 출장은 초과근무수당 지급할 수 없음(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135호, 2022.7.22. 448)

🔍 13단계 : 자체 평가

- 자체 평가회 실시
- 학생,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 1) 현장체험학습 실시 후,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실시 후에는 학생·교사 대상의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평가 등(서식참조)
- 2) 학교에서는 만족도 결과 및 평가결과 등을 다음 연도 운영 계획, 업체 및 장소 선정, 프로그램 질 개선 등의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 14단계 : 실시 과정 및 평가 결과 탑재

- 운영 결과 공개(종료 후 20일 이내)
 - '경기교육모아 - 현장체험학습 - 사전사후정보방' 탑재
- 체험학습과 관련된 사후 교육활동(권장)

- 1) 목적
 - 현장체험학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교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만족도 공개 등을 통하여 업체의 책무성 제고 및 운영 프로그램의 질 개선
- 2) 사후 필수 항목 정보방 입력 내용(학생 1인당 평균 경비, 학생만족도)
- 3) 공개 방법 : 경기교육모아-현장체험학습- '사전사후 정보방' (<https://more.goe.go.kr>)탑재
 - '사전' 입력한 창에서 '수정' 클릭 후 사후 정보 입력함



국외 체험학습 유의사항

- 참여인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국외 체험학습은 세부계획서(국외 체험학습 신고서 포함) 및 국외 체험학습 자체점검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컨설팅 후 실시한다.
- 체험학습 규모와 상관없이 보조인력의 배치를 권장하고 인솔교사도 가급적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이수하도록 한다.
- 국외 체험학습 사전답사는 1회 이상 실제 인솔자를 중심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전답사를 2회 이상 실시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진, 동영상 등으로 점검할 수 있다.)
- 방문국 현지 대사관, 영사관, 여행사 등을 통하여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해외 감염병 정보 확인(www.해외감염병now.kr), 검역정보사전 입력시스템(<https://qcode.kdca.go.kr/>) 등 관련 사이트 참고
- 국외 체험학습은 학부모 동의 찬성율이 **90% 이상일 경우**에만 추진이 가능하다.
- 국외 체험학습 인솔 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에 계획서 및 보고서 등록
※ 인솔교원의 국외 출장은 초과근무수당 지급할 수 없음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135호, 2022.7.22. 448)
- 해외 현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생은 참가를 자제한다.
- 항공기 또는 선박 이용 시 탑승 수속 및 절차를 안내하고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을 한다.
※ 국외 교류학습 운영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 바람

3 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컨설팅 방안

가. 현장체험학습 컨설팅 방침

- 1) 컨설팅은 학교를 지원하는 활동이며 현장체험학습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
- 2) 컨설팅 위원은 결과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3) 학교는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컨설팅 활동 내용은 본 매뉴얼을 기본 지침으로 한다.

나. 컨설턴트 구성

- 교육지원청별 분야별 전문가를 5인 이상의 적정 인원으로 구성
(장학관, 교장, 교감, 장학사, 행정실장, 주무관, 교사, 안전전문가 등 다양하게 구성함)
- * 안전전문가 : 외부안전요원 자격기준을 갖춘 지역 전문가(예: 퇴직 소방·경찰 공무원)

다. 컨설팅 대상

- 1) 대규모(4학급 이상 그리고 학생 수 100명 이상)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 국외 체험학습을 계획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대규모 수련활동의 경우 필요시 실시)
- 2) 소규모(3학급 이하 또는 참가 학생 100명 미만)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 학교는 학교에서 희망시 컨설팅 실시

라. 컨설팅 방법

- 1) 컨설팅 대상학교를 그룹핑하여 컨설턴트 지정 및 필요 시 유선 컨설팅 등 상시적 지원체계 구축
- 2) 대규모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및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성 검토
- 3) 운영지침 및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학교의 세부계획서 및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컨설팅 실시
- 4) 계약 시 위탁업체와 갈등 조율, 계약 서류 관련 학교 지원
- 5) 학교의 보조인력 배치 요청시 인력풀 안내

마. 컨설팅 일정

- 1) 교육지원청의 별도 계획에 의거하여 일정을 협의하여 실시(일괄 또는 수시 컨설팅)
- 2)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국외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세부계획서 및 자체점검표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교장 결재 후 교육지원청에 제출

바. 컨설팅 결과 환류

- 1) 안전대책 등이 미흡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시행 계획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
- 2) 컨설팅 결과는 접수 후 2주 이내 해당 학교에 환류(시한이 촉박한 경우 환류 시기를 앞당겨 환류)
- 3) 컨설팅 대상 학교는 최종컨설팅 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시행 전까지 컨설팅 권고내용을 세부계획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
- 4) 필요시 컨설팅단은 세부계획서를 재요구하여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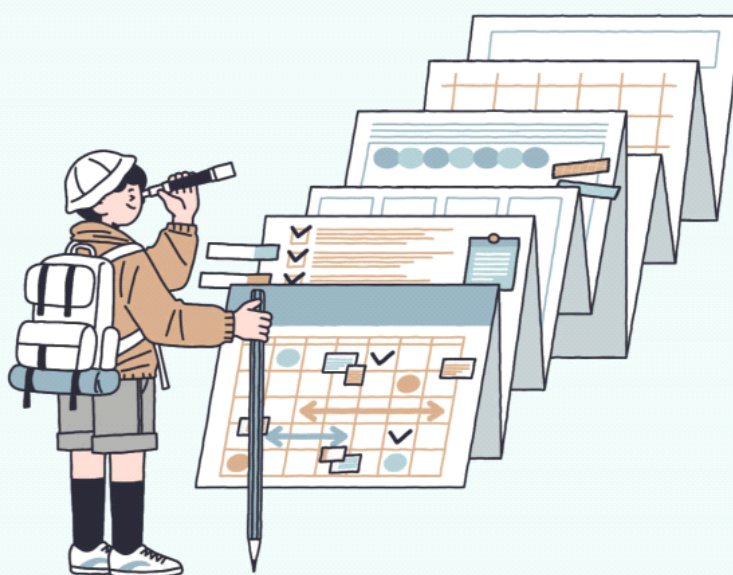
MEMO



02

현장체험학습별 안전조치 안내

03



부 록

I.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규

1.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2.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3. 전세버스 관련 법령 일부
4. 기타 관련 규정

II. 계약 방법별 진행 절차

1. 수의계약
2. 입찰
3. 계약 시 구비서류
4. 계약 시 유의사항

III.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및 신고제

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안내
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안내
3. 안심 수학여행 점검 서비스 안내
4. 청소년 단체 현황

IV. 안전한 체험학습 Q&A

1. 숙박형 체험학습
2. 1일형 체험학습
3. 기타

V. 참고 사이트 및 모바일 앱

VI. 현장체험학습 업무 담당자 연락처

※ 각종 운영 서식은 경기교육모아 누리집 탑재(<https://more.goe.go.kr>)

부 록



I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규

1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 2015. 3. 1.] [경기도조례 제4806호, 2014. 11. 10., 제정]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031-820-068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사전답사"란 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등의 모든 재해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안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생안전향상에 대한 지원 방안
3. 안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
4. 안전교육 운영지원 방안
5. 학생안전 관리·감독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체험학습에 있어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체험학습 기본계획)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
2. 체험학습 안전교육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대하여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다.
- ④ 학교장은 4학급 이상 또는 학생 수 100명 이상 단위로 실시되는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심의·자문사항을 기초로 체험학습 실시 전에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 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학부모의 참여)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8조(체험학습 지도·감독) 교육감은 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임) 교육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806호, 2014.11.10.〉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1.4.] [경기도교육규칙 제903호, 2021.11.4, 타법개정]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031-820-06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안전책임자”란 여행인솔자, 차량운전자, 철도 기관사 및 승무원, 선박의 선장 및 선원, 항공기 기장 및 승무원, 현장체험학습 시설의 대표자 및 그 소속 직원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고시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자율활동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다.

제4조(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1. 소규모 주제별 체험학습 형태로 운영
 2. 버스 등 차량의 일렬운행 방식보다는 단독 또는 소수 차량단위로 운행
 3.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양
 4.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5.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 ② 학교장은 학교가 경비 전액을 부담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도 참가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 ③ 학교장은 체험학습에 불참하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조례 제9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4개 학급 이상 또는 학생 수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 사전답사) 학교장은 일일형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시설·교통수단의 비상구 등이 표시된 배치도를 사전에 교육하고, 수상활동·산행활동·공연관람 등 활동별 체험학습에서 예상되는 교통·화재 사고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 또는 토론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① 학교장은 교통수단과 시설의 사용 전에 긴급상황을 대비한 안전장구의 비치 및 사전 안전교육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솔책임자는 체험학습 교육자료와 긴급상황을 대비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각 차량마다 “학생 현장체험학습” 표지를 부착한다.

제8조(인솔자 등)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에 따른 인솔책임자, 인솔·지도교사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임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인솔책임자는 체험학습 중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안전책임자, 인솔·지도교사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인솔·지도교사는 교육목적에 맞게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신체가 허약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확인·관리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인솔·지도교사는 차량으로 이동 시 운전자 가까이에서 탑승하여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수칙) 인솔·지도교사는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그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할 것
2. 인솔책임자, 인솔·지도교사, 안전책임자, 프로그램 진행자 등의 안전지도 사항 준수할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인솔·지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할 것
4.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인솔·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을 것
5.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또는 시설 등 접근 금지
6. 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제10조(사고처리) ① 인솔 책임자와 인솔·지도교사는 체험학습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처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학교장과 소방서·경찰서 등에 신속히 구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긴급상황에 따른 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교육장에게 그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체험학습 지도·감독) 조례 제9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장은 관할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 계획·시행 단계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점을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행의 보류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44호, 2015.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전세버스 관련 법령 일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4] <개정 2023.4.18.>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 1) 운송사업자는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2)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단정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중략>

- 15)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방송하게 해야 한다.
- 16)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 17)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 18)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중략>

- 20)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중략>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중략>

3) 전세버스

- 가)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나) 앞바퀴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다)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 라) 영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략〉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가.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나. 질병·피로·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다. 자동차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라.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 4)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행위
 - 5)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이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를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 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 아.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략〉

- 차.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중략〉

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대열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파. 여객의 안전한 승차·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하.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4 기타 관련 규정

법령	QR코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4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창의적체험활동교육과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3장 제13조	

법령	QR코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교육부령)	
경기도 공립학교 회계 규칙(경기도교육청)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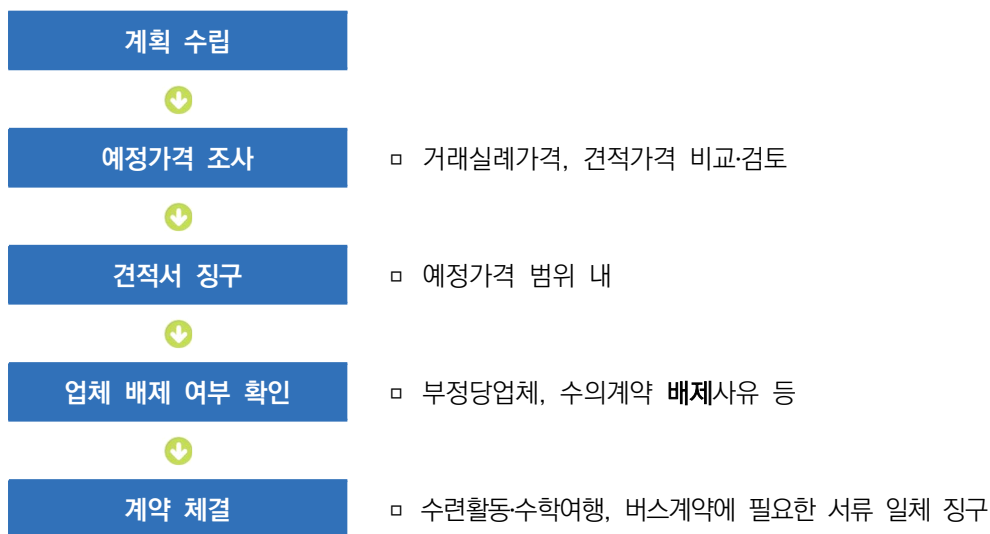
Ⅱ 계약 방법별 진행 절차

1 수의계약

가.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수학여행은 위탁 업체 선정시 위탁 총액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인솔자 포함) 1인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가능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참조)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수련활동은 운송용역, 수련활동용역 각각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가능

〈 수기견적 수의계약 업무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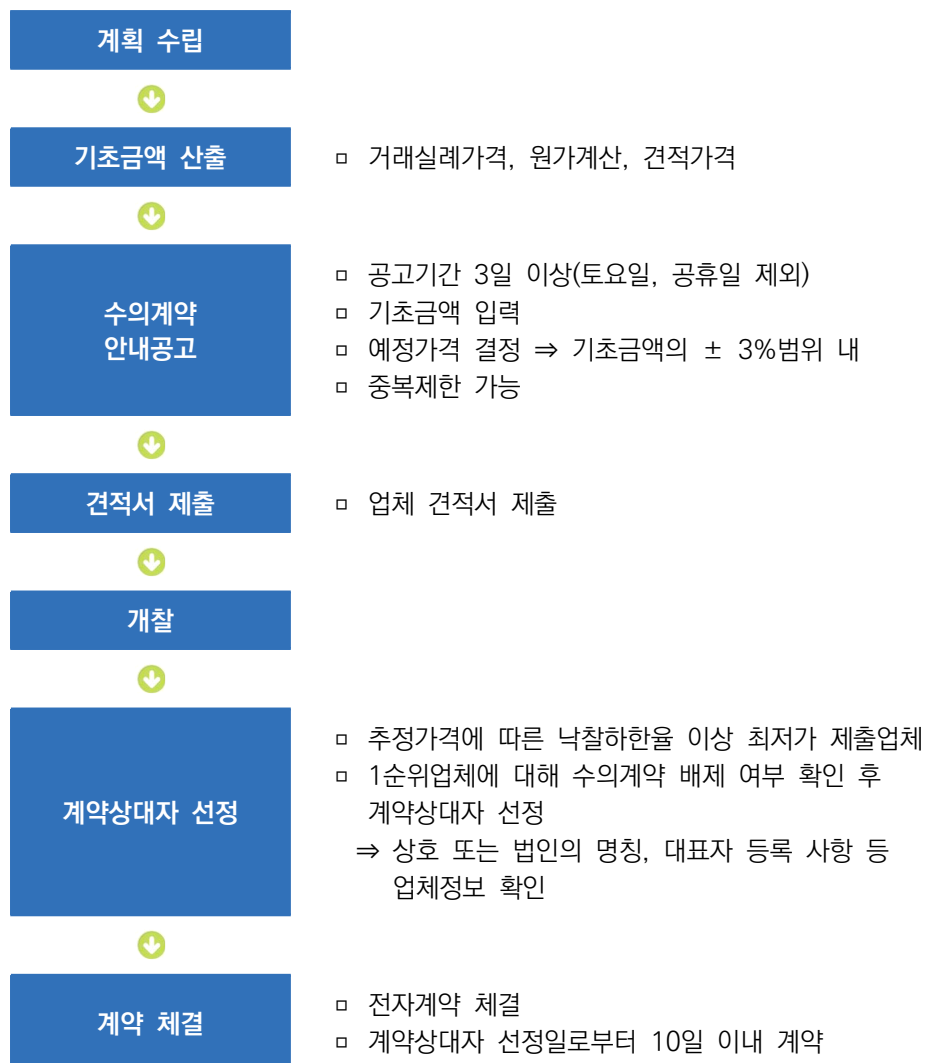


※ 2인 이상 전자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G2B, S2B 이용 가능

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G2B, S2B 이용 전자견적)

- 추정가격 1억원 이하는(전자견적 소액수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단,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배제사유로 제한할 수 있음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 전자견적(G2B, S2B) 계약업무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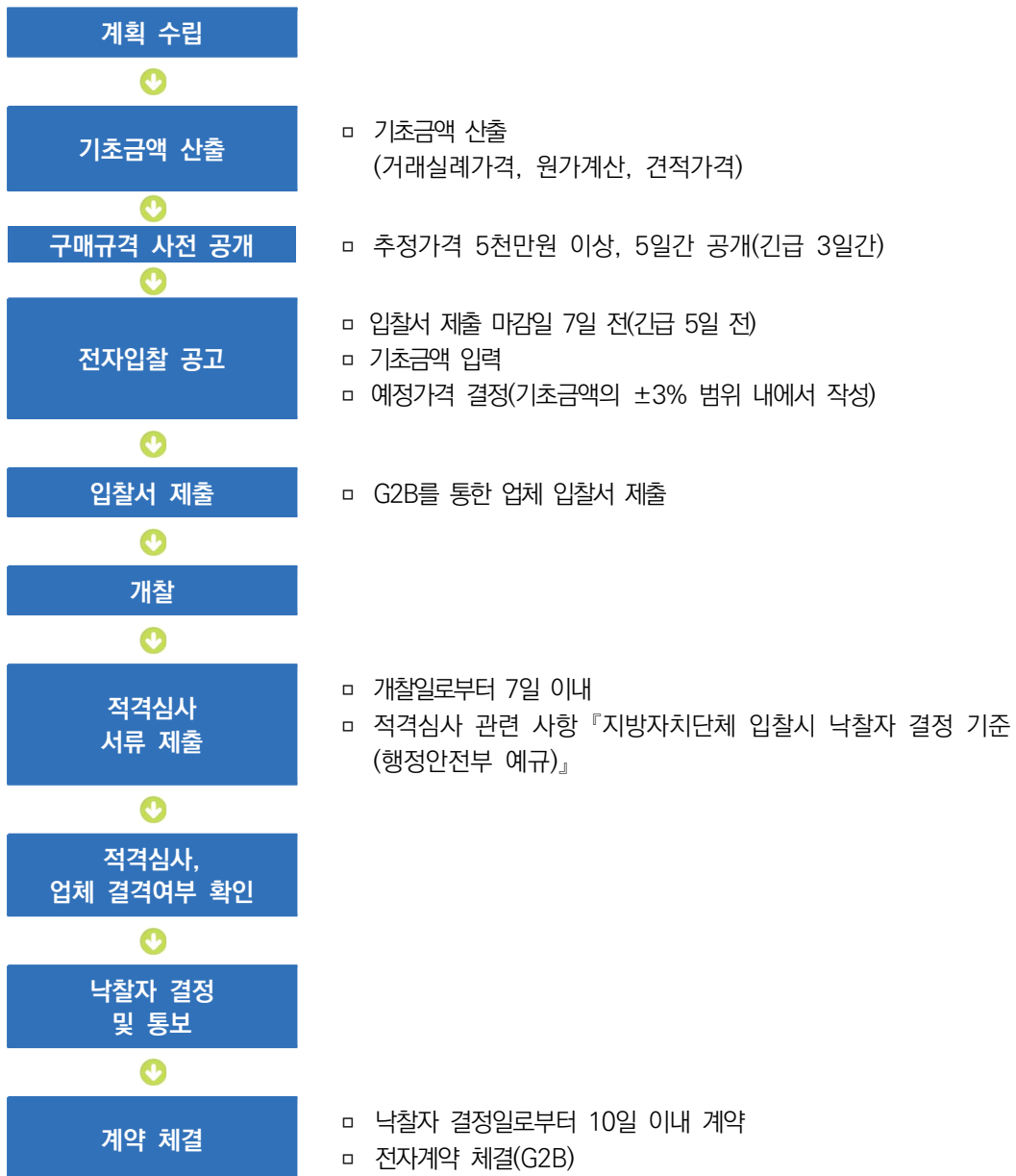
-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90%
-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2 입찰

가. 일반(제한)입찰

-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 결정
- 과도한 지역제한으로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위한 편법적 운영을 하지 않도록 유의

〈 일반(제한)입찰 계약업무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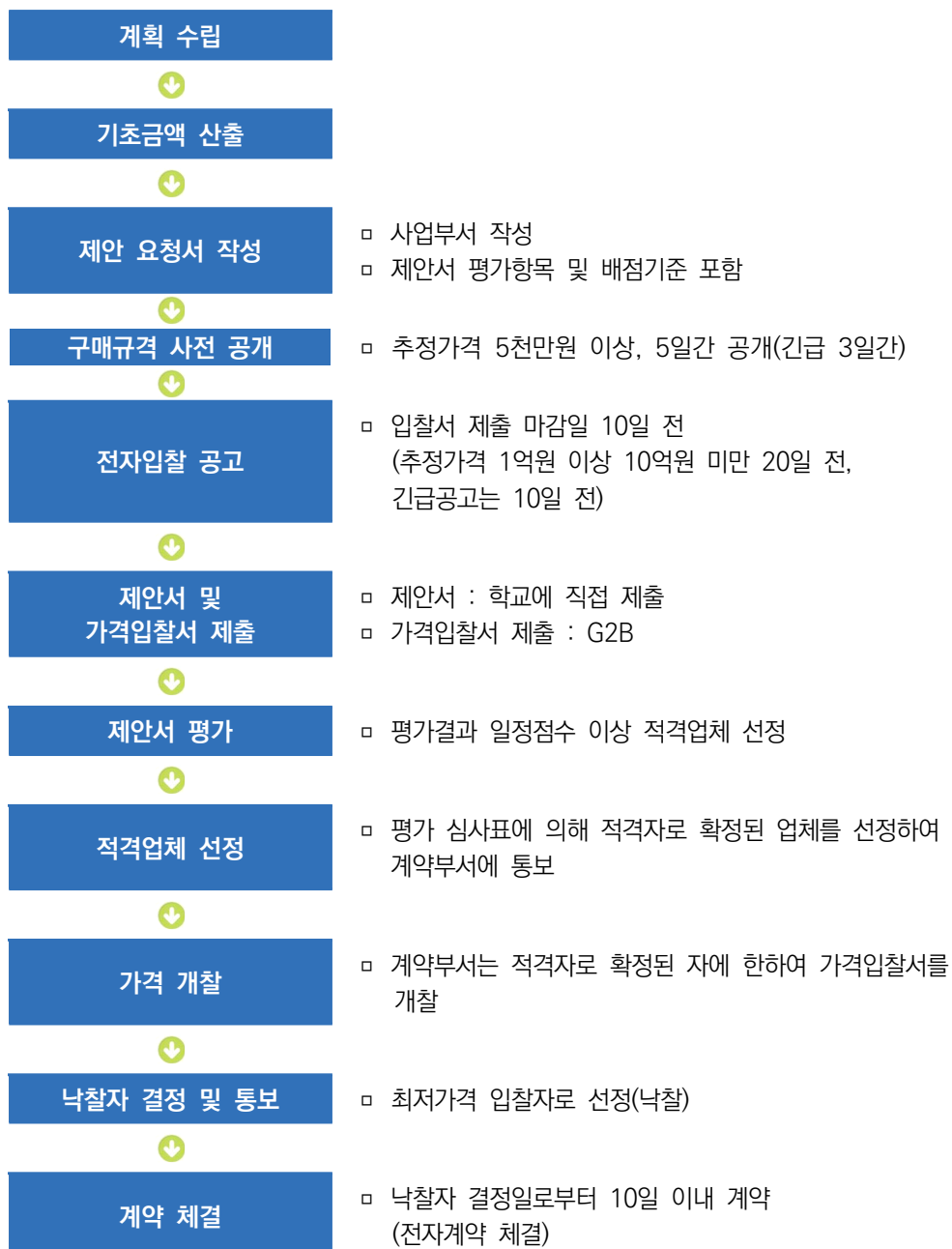


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기술 입찰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한 후에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을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계약업무 흐름도 〉



1)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공고

-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 긴급인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 2단계 입찰은 규격·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 원칙
- ※ 필요한 경우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규격·가격 동시 입찰)할 수 있음**.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 공고문 등록 시(규격·가격 동시 입찰) 유의사항
 - 계약 방법을 '제한경쟁(총액)-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로 입력
 - 가격입찰서 제출 방법을 '전자입찰'로 선택
 - 낙찰자 선정 방법 : 행정안전부 기준 → 제안서 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 투찰자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는 학교를 방문하여 접수(G2B 상으로 전자접수도 가능)
- 가격입찰서는 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G2B 상으로 제출

3) 제안서 평가

- 평가표 작성
- 제안서와 제안서 설명을 토대로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 시 유의사항 】

-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사전 발표 순서 등(예시 : 접수 순, 추첨 등)을 미리 공지하여 공정성 확보
- 정량적 평가 분야는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하여 평가(주관적 평가 금지)
- 상위 2개 업체 적격처리는 부적정함(공고서에 명시한 일정 점수이상 업체에 대해 적격처리)

4)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가격 개찰 실시)
- 부적격업체(일정점수 미만인 자)는 G2B 가격개찰 시 제외하고 개찰
- ※ 일정점수에 대한 기준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며,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함

3 계약 시 구비서류

가. 일괄(숙소, 운송 등)위탁한 경우

- 여행 계약서(표준계약서 사용)
- 견적서(비용 내역서) - 경비는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교육활동비,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
- 식단표, 객실 배치도, 수학여행 일정표(프로그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 운송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전세버스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를 운송업체에 요구하여 확인
 - ※ 제출받은 서류는 교통안전공단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https://www.kotsa.or.kr/safeinfo>)에 반드시 진위여부 확인
 - ※ 전세버스 입찰 및 계약시 정보제공 등 안전강화 방안(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3158(2015.8.6.) 준수
 -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는 계약에 필요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음
 - 차량보험증권 확인
- 안전요원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자격 증빙서류 (해당 자격증 + 안전연수 이수증) 제출, 신분증은 현장 확인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또는 현장체험학습 실시 4주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점검 요청)
- 프로그램 인증 확인서(외부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증(5인 이상 사업장 개인정보보호교육 필수 의무사항)
-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보호서약서
-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 관련)

나. 숙박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여행 계약서(소정 양식)
- 견적서(산출내역서)
- 식단표, 객실 배치도, 교육 일정표(프로그램), 숙박업체 현황표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다. 운송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계약서(표준계약서 사용)
- 견적서
- 운송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전세버스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운송업체에 요구하여 확인
 - ※ 제출받은 서류는 교통안전공단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https://www.kotsa.or.kr/safeinfo>)에서 반드시 진위여부 확인
 - ※ 전세버스 입찰 및 계약시 정보제공 등 안전강화 방안(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3158 (2015.8.6.) 준수
 - ※ 계약에 필요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음
 - 차량보험증권 확인

라. 수련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 수련시설 이용 계약서(소정 양식)
 - 교육청 및 지자체 직영 수련시설의 경우 '사용신청서'로 계약서 대체
- 견적서(비용 내역서) - 식비, 교육활동비, 시설이용료 등 세부내역 명시
- 식단표, 객실 배치도(방 배정), 교육 일정표 (프로그램)
- 수련시설 현황표 (강당, 체육관, 모험시설, 수영장, 식당의 규모 등)
-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및 인증서(인증 프로그램) 사본
-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교육청 관련은 제외)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마. 공통 계약 서류

- 계약 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나라장터 출력 가능)
 - 수의계약체결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청렴서약서
 -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 확인)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계약 이행 보증보험 증권(각서), 사용인감계,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지(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 징구)
 - 인감증명서(전자계약 체결 시 제출 생략)
- 종료 후 :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국제·지방세 완납증명서(수의계약시 생략 가능), 4대보험 완납 증명서, 청구서
 - ※ 기타 계약 서류는 지계법,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징구

4 계약 시 유의사항

- 가. 소정의 계약서를 사용하되 기타사항에 상호 협의사항 명시 가능
(예) 동일 행사기간에 타고생 수용여부 문제 등
- 나.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의 관련 대책 포함 여부 확인
- 다. 시설의 숙박정원 :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준수
- 라.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 가입(종류, 보상 범위 등) 여부 확인
- 마. 운전자 음주감지 실시 및 안전운전 명시(음주 확인 시 운전자 교체, 112신고조치 포함)
- 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을 명시
- 사. 노선버스는 전세버스로 투입할 수 없음을 명시
- 아.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의6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 ③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2.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 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5 그 밖의 기타사항

가. 계약 해지 관련

- ※ 계약서(특수조건)에 여행자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명시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학습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법규에 정한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업 표준약관 〉

- ❖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020호(2019. 8. 30.개정)
 -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①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약관 【제13조 2항 2호의 가】에 의거 손해배상 없이 계약해지 가능).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0021호(2019. 8. 30.개정)
 -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①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약관 【제16조 2항 2호의 가】에 의거 손해배상 없이 계약해지 가능).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나. 위약금 지급

-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또는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음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업체에 위약금을 지급
- 여행에 관한 위약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름

〈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지급 분쟁 해결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12.20. 일부개정, 별표2)

분쟁유형		해결기준
국내 여행	• (숙박여행)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중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중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50% 감경
국외 여행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중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중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50% 감경

Ⅲ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및 신고제

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안내

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요

1 개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제도

2 인증대상 : 청소년(만 9세~24세)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

- ▶ 인증을 필히 받아야하는 대상
 -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활동, 위험도가 높은 활동(수상, 산악, 장기도보, 위험기구 사용, 사고대비 물질사용, 항공활동)
- ▶ 인증신청 제외대상
 - 단순 체험(견학)활동, 단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 내지 강좌, 운영시간 최소기준 미 충족 활동,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등

3 인증기준

- 활동유형 :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활동유형	내 용
기 본 형	1일 3시간 이상 혹은 1일 2시간 이상 2회기 이상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활동
숙 박 형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이 동 형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 인증기준 : 공통 - 3개 영역, 6개 기준 / 개별 - 2개 영역, 5개 기준 /
특별 - 2개 영역, 2개 기준

4 주요내용

- 청소년의 발달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여부 확인
-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특별기준 마련 및 이행여부 확인 실시
 - * 인증을 받아야하는 대상 표기 및 특별기준 제정(「청소년활동진흥법」개정, '14.7.22.적용)
 - * 전문심사원의 현장확인 및 수시점검 진행 : 안전고려활동 및 일정규모 이상의 프로그램, 인증프로그램 최초 운영기관 등
 - * 활동장소의 정기적 안전점검 여부 확인 및 지도자·참가자 안전교육 매회 실시
- 청소년 활동유형 및 내용에 따른 적절한 지도자 배치
 - * 안전전문인력(「청소년활동진흥법」개정 2014.7.22.시행) 및 전문지도자·유자격자 배치
- 인증받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행정처분 진행(인증취소, 과태료 부과 등)

나. 인증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절차

1 인증프로그램 검색(확인) 및 선정

- 프로그램 검색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youth.go.kr)
- 일정협의 및 인증사항 확인 : 운영기관 직접 확인(프로그램 변경·추가 불가)
 - *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인증서와 활동기록 발급여부 확인
 - * 현 제도는 프로그램 인증으로 기관 소유의 인증프로그램인지 확인
 -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 등급 확인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www.youth.go.kr)

2 인증프로그램 선정 및 활동 참가

- 인증정보시스템에서 참여일자(실시일자) 승인사항 확인 후 활동 참가
 - * 협의된 내용과 인증정보시스템 승인사항이 다를 경우 진위여부 확인 필요
- 참여자 안전관리 및 참여기록 등재를 위한 참여 학생 명단 운영기관 제출
 - * 청소년의 참여기록은 국가가 관리·제공(여성가족부 장관 명의)
- 인증수련활동 참여 중 인증사항과 다를 경우 사실 여부 확인 및 제보 가능

3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 참여기록 확인서 출력(온라인, 회원가입 후 참가자 개별 출력)
 - * 실시간 발급(활동 종료 20일 이후 출력 가능), 단체발급 필요시 진흥원 문의
- 포트폴리오 참가자 선택 작성 및 발급

다. 인증프로그램 활용에 따른 안내

1 현장체험학습 활동 선정 시 인증 관련 확인사항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인증대상은 기관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기관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프로그램 선정 시 인증여부를 확인해야 함
- 인증프로그램 선정 시, 활동 실시일 14일 이전까지 계약이 완료되어야 함
 - * 인증프로그램은 실시 14일 이전까지 실시정보 및 주요 내용의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실시일자 미승인 시(활동실시 14일 이전 통보), 인증프로그램으로 인정이 불가함
 - * 확인방법 : 인증정보시스템(www.youth.go.kr), 프로그램 검색 → 월별 인증수련활동

2 인증프로그램 선정완료 후 학교의 확인 사항과 역할

- 활동 예정 프로그램과 인증서에 명기된 프로그램의 동일여부 확인(활동명, 주요내용)
- 참여기록 등재를 위한 참가자 인적사항 제공(「청소년활동진흥법」 제37조, 시행령 23조)
 - * 인증프로그램 사용 시 참가자의 참여기록은 의무적으로 등록·발급되어야 함
 - * 활동기록 등재 요건 미충족 시 인증프로그램 사용 불가
 - * 활동기록 등재를 위한 등재요건(제공정보) : 참가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3 그 외 중요 확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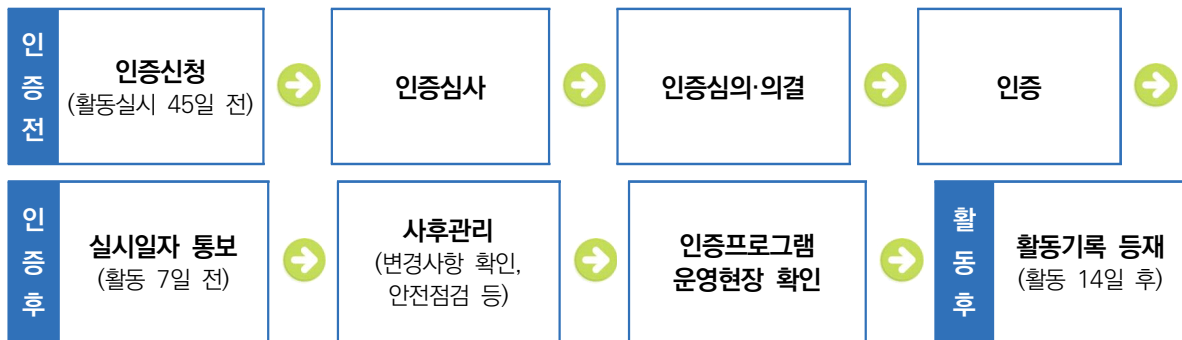
- 인증프로그램은 국가 인증사항으로 일정 및 시간, 프로그램 내용 조정 불가
- 인증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전 일정(모집에서 해산까지)을 심사·심의한 것이므로, 타 프로그램을 추가 등록할 수 없음(학교 명사 특강, 특별 프로그램 추가 등)

〈 국가 인증수련활동 기록확인서 관련 조항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 ③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3조(수련활동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단체는 법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시간, 장소, 주관기관, 내용, 참여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활동진흥원 : 법 제 6조제 1항에 따른 활동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참고 1 인증제 운영절차



- ▶ 자세한 사항 확인 및 문의(불편/건의사항)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운영부 02-330-2852~9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www.youth.go.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www.kywa.or.kr

참고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및 인증마크

[별지 제17호 사식] - (제36조 관련)

발급번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인 증 번 호 : _____

운 영 기 관 명 : _____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_____

활 동 명 : _____

주 요 활 동 장 소 : _____

인 증 기 간 : _____

참 여 대 상 : _____

참 여 인 원 : _____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위원장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인증마크

(인증번호, 프로그램명, 참가대상, 운영기관명과 함께 사용)

참고 3 인증수련활동 검색방법

1 프로그램 검색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청소년활동검색 활동사업안내 복지보호안내 고객센터 공지/뉴스

내게 맞는 활동찾기 자유학기제 활동찾기 수능후 활동찾기 내가 다녀온 활동후기

내게 맞는 활동 찾기

전체활동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공기관, 민간시설의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단체 개별 가족

가족 그룹을 선택하면 참가대상, 연령, 지역이 목록에 자동선택돼요

기관 유형을 선택해요

참가대상 전체

지역선택 전체 선택

연령선택 연령선택

활동시기 2015-09-18

키워드검색 활동명,기관명을 입력하세요

선택하면 영역, 인증, 신고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기관유형 전체 전체 활동분류 일반 방학중 수능후 자치 동아리 추가선택 +

검색

강렬순서를 변경해요 보기방법을 변경해요

등록순 인기순 참가비순 활동일순 마감일순

리스트 이미지 8개씩 보기

덕유산 캠프 - 가슴을 열어요

클릭하면 상세 내용이 보이고 활동 참가하기, 기관 참가기도 돼요~

활동일 2015-08-21~10-31

오전상대 상시모집 지역

인원 40명 참가비 0

연령 12~18

등록일 08-19

꿈을찾는 도전! 북극성 캠프

오전개방

활동일 2015-08-22~10-31

오전상대 상시모집 지역

인원 50명 참가비

연령 12~18

등록일 08-19

인증되거나 신고된 활동이면 마크가 표시돼요~

청소년, 난타아카데미

문화예술

활동일 2015-08-22~12-31

오전상대 상시모집 지역

인원 30명 참가비 10,000

연령 12~18

등록일 08-19

나라사랑 환경사랑 '지킴이운동...

환경보전

활동일 2015-08-20~09-30

오전상대 상시모집 지역

인원 30명 참가비 0

연령 12~18

등록일 08-12

2015 무안군청소년수련관 거...

기타

활동일 2015-01-01~08-31

오전상대 상시모집 지역

인원 123명 참가비 0

연령 12~18

등록일 08-03

"나를 깨우는 리더십 캠프"임...

건강보전

활동일 2015-08-01~08-31

오전상대 상시모집 지역

인원 11명 참가비 0

연령 12~18

등록일 08-03

즐거운 나라사랑 활동 테스트 ...

환경보전

활동일 2015-07-01~09-30

오전상대 상시모집 지역

인원 40명 참가비 0

연령 12~18

등록일 07-31

어린이 "인체탐험" 활동

기타

활동일 2015-04-01~12-31

오전상대 오전모집 지역

인원 165명 참가비 1,800

연령 12~18

등록일 07-28

<< < 1 2 3 4 5 6 7 8 9 10 > >>

2 프로그램 정보 확인 : 인증번호, 참가대상, 모집방법, 일정, 장소, 담당자, 기관정보 및 위치, 활동사진, 지자체 신고여부 등(해당기관을 통해 관련 증빙자료 추가열람 가능)

내게 맞는 활동 찾기

HOME > 청소년활동검색 > 내게 맞는 활동 찾기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

[진로탐구] 융(DNA)에서 꿈(RNA)으로 고등학교



추가이미지

[페이스북](#)
[트위터](#)
[URL 복사](#)

분류	인증시스템 연계	인원 및 연령	300명 ○
지역	전라북도 김제시	참가비	105,600
활동일시	2016-11-14 ~ 16 외 2건	모집기간	개별문의
참가대상	개별/단체모집	차량운행	-
인증번호	제 4692 호 바로가기	신고번호	2016-30외 3건 바로가기
연용유료기간	2019-06-23까지	숙박여부	숙박형
반복여부	-		
기관명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합센터	전화번호	063-540-5600
담당자		담당자이메일	
관련사이트	nyac.or.kr	팩스번호	063-540-5603
첨부파일			

* 해당 정보는 운영기관에서 직접 등록하였으며 문의 및 신청은 기관전화번호를 참고하세요.

[후기등록하기](#)
[기관필하기](#)
[활동필하기](#)

활동정보

기관정보

연세

활동목적 및 상세내용

'융(DNA)에서 꿈(RNA)으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분야, 즉 예술, 농업, 생명과학, 그리고 생명공학 체험프로그램으로 청소년에게 평소 접하지 못했던 진로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갖는 진로갈등 및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청소년의 미래기대나 진로의식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청소년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관을 갖고 미래를 열람하여 청소년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여 청소년은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만의 DNA를 만들고 그 '액(물)'을 띄워서 자신만의 꿈(RNA)에 다가서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 여는 마당(안전교육 및 인증과 생활 안내) 및 마음열기.
- 진로의식 향상 프로그램(꿈을 이룬 사람들, 직업과 나).
- 선택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 공통: 생명과 미래(농업생명체합관)
- 농업: 생명을 품은 씨앗
- 과학: 인류의 약 아스피린
- 예술: 생명을 그리는 이야기(수화)
- 생명선 플랜팅스(댄스)
- 우리 직업 언어요(상황극)
- 생명들의 길(공동체 활동)
- 생명들의 외침(에크리레이션)
- 청!소! 공감마당(보이는 청소년 라디오)
- 맺는 마당(캠프 마무리 및 설문조사)

활동정보

기관정보

연세



크게보기

기관명 |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합센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합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복지실로서, 농업생명을 통해 밝은 미래의 미래를 열어줄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1일에 전북 김제시 백골계 죽은계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청소년이 생명을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생애 학습과 미래 농업의 가치 인식 그리고 핵심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합센터는 역사적으로 중요로운 농경문화유산인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라 최대로 고대 저수지 백골계 인근 3만510평방미터 부지에 총 253억 원이 투입해 건립되었으며, 432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과 강당, 세미나실 등 총합 3,000여평의 시설과 42m 높이의 자연관망대 등을 갖췄습니다.

프로그램은 가족이나 동아리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선 여행지(5일, 1박2일)' 청소년 대상의 '백골계 체험' '가인적(가인)과 녹색과학자(과학)' 청소년지도자 교사 대상의 '농업생명지도(생리)'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합센터에서 진행하는 농업생명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이 생명을 연구하는 과학실험과 농업생산 기술을 실체로 관찰함으로써 지구가 지구생태계의 일부임을 깨닫고, 이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며, 자연사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깨닫는 청소년 수련활동입니다. 현재 보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농업생명은 인류 생존의 기반으로 삶을 향상하고 식량도 제공하며,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은 바로 우리 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아가는 세상이 나와 한 몸임을 느끼면서 일상 속에서 생명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농업생명 체험센터가 되어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값있는 인생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합센터는 세계의 모든 청소년이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기를 기원하며, 즐거운 농업생명 체험생활을 할 것입니다.

사업자번호 | 403-62-14276

전화번호 | 063-540-5600

팩스번호 | 063-540-5603

홈페이지 | nyac.or.kr

기관명 | 청소년수련원

대표자명 | 최희우

활동장 위치



등록된 위치정보가 없습니다.

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안내

가. 신고제 개요

1 개념

「청소년활동진흥법」제9조의2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2 목적

-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자가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동 운영 전반의 안전을 점검
- 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지도자의 참여 방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신고 수리된 수련활동 정보를 공개하여 청소년, 교사 등 모든 사람이 쉽게 수련활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선택과 참여 결정에 도움

3 신고대상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여 청소년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인 경우

나. 신고수리된 수련활동 정보 확인하기

1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의 [인증 수련활동 찾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의 [인증 수련활동 찾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청소년활동 청소년 지킴이 활동기관 안내 수련시설평가 e청소년 안내 청소년활동을 검색하세요! Q 전체메뉴

인증 수련활동 찾기
안전하고 유익한 인증수련활동 찾기

봉사활동 찾기
원하는 봉사활동을 한 눈에

인증수련활동 참가여부 확인
원정, 단체명, 활동명 등 계약 확인

재능나눔 등록/찾기
원하는 활동을 직접 만들어 참여

최근 등록된 체험활동

2023년 1분기 청소년교육문화강...
서산시청소년문화의집
041-688-7320

2023 완산야호청소년센터 소속 ...
완산야호청소년센터
063-226-5193

메리 케이마크 청소년들과 크...
기장청소년센터
051-792-4980

마산회원도서관과 2023년 도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055-711-1355

죽전·감삼 청소년회 겨울캠프
군위군청소년수련원
054-383-0317

2 청소년활동 찾기에서 [인증프로그램 체크 표시 확인 후] 검색



청소년활동 찾기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 찾기

운영방식 ☐ 전체 ☐ 대면활동 ☐ 비대면활동 ☐ 혼합활동 (대면 + 비대면)

활동영역 ☒ 전체 ☐ 건강/스포츠 ☐ 모험개척 ☐ 역사탐방 ☐ 봉사활동 ☐ 교류

☐ 과학정보 ☐ 진로탐구 ☐ 자기개발 ☐ 문화예술 ☐ 환경보존 ☐ 기타

검색어 활동명,기관명,영역명을 입력하세요. [+ 상세검색](#)

지역 기관유형

참가대상 전체 연령 전체

숙박형태 전체(단일+숙박) 가격 전체

활동분류 ☐ 일반 ☐ 방학중 ☐ 수능후 ☐ 자치 ☐ 동아리

활동시기 ☒ 전체 ☐ 이번달 ☐ 3개월 ☐ 1년 ☐ 선택 ~ ☐ 지난활동 포함

[검색](#) [초기화](#)

3 검색된 프로그램에서 [인증번호] 확인

대면활동

문화예술

창의특목 도예공방

- 인증번호 : 5795A05A-11026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참가비 : 15,000

- 기관명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 모집기간 : 개별문의
- 연령 : **초**

- 활동일 : 2022-12-31
- 인 원 : 10명
- 등록일 : 2022-12-14
- 인증기간 : 2022-12-07~2025-12-06

대면활동

과학정보

『언(UN)플러그드 코딩』

- 인증번호 : 5795B02A-11024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참가비 : 48,000

- 기관명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 모집기간 : 2022-12-12 ~ 21
- 연령 : **초**

- 활동일 : 2022-12-26 ~ 29
- 인 원 : 10명
- 등록일 : 2022-12-14
- 인증기간 : 2022-12-07~2025-12-06

대면활동

과학정보

초코봇

- 인증번호 : 5445A02A-11061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참가비 : 무료

- 기관명 : 하남시청소년수련관
- 모집기간 : 개별문의
- 연령 : **초**

- 활동일 : 2022-12-20
- 인 원 : 10명
- 등록일 : 2022-12-14
- 인증기간 : 2022-12-07~2026-12-06

대면활동

진로탐구

찾아가는 하루체험 Art&Job 습디자이너

- 인증번호 : 0638A08C-11039
- 모집기간 : 개별문의
- 연령 : **고**

- 기관명 : 광주광역시 화정청소년문화의집
- 인 원 : 15명
- 등록일 : 2022-12-13

- 활동일 : 2022-12-28
- 지역 : 광주광역시 서구
- 참가비 : 15,000
- 인증기간 : 2022-12-07~2026-12-06

4 프로그램명 클릭 후 세부 내용 확인

- 참여하고자하는 프로그램명을 클릭하여 주요 프로그램 내용, 인증수련활동 여부, 보험 가입 사항, 지도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

3 안심 수학여행 점검 서비스 안내

1 개념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해 이용할 숙박 시설, 음식점, 체험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위해 요인을 시정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서비스 신청한 학교에 사전에 통보해 주는 제도

2 제주도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 (신청)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서를 50일전에 사회재난과로 요청
- (지원 분야) 제주도를 방문하는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학생들이 사용하는 숙소 및 이벤트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결과 회신(서식 참고)
- (결과 알림) 신청학교에 원칙적으로 여행 10일 전에 점검결과 알림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 064-710-3933

3 경주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 (신청)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서를 50일전에 관광컨벤션과로 요청
- (지원 분야) 숙박시설 및 음식점 안전점검 추진한 사항, 관광버스 점검(서식 참고)
- (결과 알림) 신청학교에 원칙적으로 여행 15일 전에 점검결과 알림
- (문의처) 경주시 관광컨벤션과 ☎ 054-779-6832

4 청소년단체현황

청소년단체현황

(2025.1. 기준)

순	청소년단체	소관부처 (소관법령)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1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 (RCY)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02-3705-3632 (02-3705-3777)	rcy.redcross.or.kr
2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여성가족부 민법 제32조	043-221-2918 (043-221-2919)	www.chunghyo.or.kr
3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교육부 민법 제32조	02-2662-7360 (02-2662-7361)	www.mrakorea.or.kr
4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여성가족부 민법 제32조	02-723-6165 (02-723-6167)	www.paramita.or.kr
5	한국 4-H본부	농촌진흥청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02-428-0451 (02-428-0455)	www.korea4-h.or.kr
6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02-733-6801 (02-738-3013)	www.girlscout.or.kr
7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미래창조과학부 민법 제32조	02-739-6369 (02-722-6455)	www.yak.or.kr
8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여성가족부 민법 제32조	02-738-1501 (02-732-5843)	www.rotarykorea.org
9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02-6335-2000 (0507-514-2015)	www.scout.or.kr
10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특허청 민법 제32조	02-569-7231 (02-569-7228)	www.kyic.org
11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여성가족부 민법 제32조	02-2663-4163 (02-2663-4177)	www.civoyouth.modm.at
12	한국청소년연맹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02-841-9291 (02-845-8138)	www.koya.or.kr
13	한국항공소년단	산업통상자원부 민법 제32조	02-953-7543 (02-953-7545)	www.yfk.or.kr
1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02-886-8522 (02-886-8521)	www.sekh.or.kr
15	기독교청소년협회(CYA)	전라북도 민법 제32조	1533-1091 (063-271-7040)	www.cya21.org
16	성산청소년효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032-438-4293 (032-421-4783)	www.sungsan1318.or.kr
17	세계화교육문화재단	외교부 민법 제32조	02-312-3550 (02-392-3560)	www.globaleducation.or.kr
18	숲사랑소년단	산림청 민법 제32조	02-968-0868 (02-968-0818)	www.greenranger.or.kr
19	한국YWCA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02-774-9702 (02-774-9724)	www.ywca.or.kr
20	흥사단	교육부 민법 제32조	02-743-2511 (02-743-2515)	www.yka.or.kr
21	청소년연합회	여성가족부 민법 제32조	02-733-8165 (02-722-6623)	www.yeba.or.kr
22	푸른나무재단	여성가족부 민법 제32조	02-585-0098 (02-585-0038)	www.btf.or.kr

IV 안전한 체험학습 Q&A

1 숙박형 체험학습



1. (체험학습 규모) 숙박형 체험학습의 실시 인원은 반드시 3학급 이하 또는 학생수 100명 미만으로만 실시해야 하나요?

숙박형 체험학습은 3학급 이하 또는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때는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기본 또는 세부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후 자율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4학급 이상 그리고 학생수 100명 이상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세부계획서와 함께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사전 컨설팅을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대규모 수련활동은 서류 제출은 하되 학교에서 요청이 있거나 서류 검토 후 필요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인솔자)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 학급당 인솔자가 반드시 2명이 필요한가요? 관리자도 인솔자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모든 체험학습의 경우 학급당 2명 또는 참여 학생 25명 기준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이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급당 또는 참여 학생 25명 당 인솔 교사 1명이 인솔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명이 인솔하는 경우 반드시 교사가 인솔하여야 합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 관리자를 인솔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학교주관 체험학습이 아닌 경우 사업담당자 또는 전문경력관(지도사) 등도 인솔 가능



3. (활성화 위원회) 숙박형 체험학습인 경우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같이 학년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는 모두 심의 대상이나 희망 학생 일부만 참여하는 숙박형 캠프, 숙박형 청소년단체 활동 등과 사전답사를 다녀온 1일형 체험학습의 경우는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4. (안전교육) 학교장은 인솔자에게 출발 전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해야 하는데 연수 강사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출발 전 안전교육을 위해 가급적 외부의 안전전문가(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한적십자사 체험학습 안전교육 담당 및 이수자, 인명구조협회, 소방서, 소방안전협회 등)를 확보해 연수하도록 권장하나 사정이 어려울 경우 보조인력 연수를 이수한 교원 등을 활용하여 자체 연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한 경우는 현장체험학습 담당자가 자체 연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5. (안전교육) 체험학습을 실시 할 때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요?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은 의무사항이므로 체험학습 출발 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안전교육은 안전 연수를 받은 인솔자가 직접 실시하면 됩니다. 이때 다양한 안전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학습자료, 동영상, PPT자료 등 활용)

특히 체험학습 실시 지역의 특징, 이동수단, 일정에 따른 움직임의 동선에 따른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6. (동의율)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숙박형 체험학습 동의율을 결정할 때 몇 %로 정해야 하나요?

체험학습 동의율은 전체 학년이 참석하는 경우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일부 학생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은 설정 대상이 아닙니다.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인 만큼 가급적 많은 학생이 참여하여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소수일지라도 그들을 위한 대체교육과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7. (여행자 보험) 숙박형 체험학습시 여행자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숙박형 체험학습시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학부모, 자원봉사자, 보조인력 등)를 모두 포함하여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치료비(실손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중복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할 때 상해(질병)로 인한 사망, 후유 장애 등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범위로 가입하도록 합니다.

특히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험금이 여행자 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후유장애, 입원의료비, 배상책임, 치료비, 외래의료비 등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범위로 가입합니다.



8. (동의율)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정한 동의율에 학부모 동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해야 하나요?

학부모 동의율 취합 결과 활성화위원회에서 정한 동의율에 미달될 경우 체험학습을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체험학습 계획서를 변경하고 활성화위원회의 재협의를 거쳐 동의율을 다시 설정하여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9. (적용 범위)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및 기타 학교교육과정에 운영 따른 학교 밖 체험활동이나 외부기관주체행사, 교육청주관행사, 외부기관 협조행사, 체육활동, 영어캠프, 영재캠프, 과학캠프, 진로체험활동, 청소년단체 행사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은 모두 본 매뉴얼의 체험학습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은 도교육청 각 부서의 기본계획서의 안전 계획을 우선으로 적용하나 방침이 없을 경우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학교장의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확보한 후 학교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합니다.

특히 별도의 계획이 시행되는 유치원, 특수학교(급), 체육교육(생존수영, 해외전지훈련 등), 국외 교류학습 관련 계획은 각 도교육청 담당 부서의 자체 안전 계획 및 매뉴얼이 우선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0. (소규모 인정) 한 학년 150명이 50명내외 소규모로 3팀으로 나누어 주제별체험 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겹치지 않고 이동수단도 각각 다릅니다. 다만 숙소를 같이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합니까? 이때 교육지원청의 컨설팅을 받아야 하나요?

불가피한 경우 대규모 인원의 숙소 이용은 컨설팅 없이 가능하지만, 단순 공동 숙박이 아닌 숙소에서의 대규모 활동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 컨설팅 대상입니다.

즉,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나 코스, 이동수단이 다르다 하더라도 숙소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소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시행에 따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숙소 계약의 어려움,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숙소만 함께 이용하는 경우는 숙소에서 대규모 인원이 되므로 보조인력의 배치, 대피로 확인 등의 사전 안전교육 등 알맞은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컨설팅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 공동 숙소의 이용이 아닌 숙소에서 단체 레크레이션 등 대규모 활동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 컨설팅 대상에 해당됩니다.



11. (사전답사) 근무시간(08:30~16:30)을 초과한 사전답사 출장(05:30~19:30)에 대해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대해 관련 교육부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병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학교장의 판단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이와 같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2018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p.61)

2 1일형 체험학습



12. (대규모 운영) 1일형 체험학습의 경우 4학급 이상 그리고 100명 이상의 규모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규모에 따른 학생 안전 대책 수립 및 소규모 형태 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4학급 이상 그리고 100명 이상의 규모로도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13. (활성화위원회) 1일형 현장체험학습인 경우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심의가 의무입니까?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심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1일형 현장체험학습 중 사전답사 생략할 경우 체험학습 안전대책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고위험 활동이 포함된 경우는 답사 생략 불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같이 학년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와 사전답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만 심의 대상이며, 희망 학생 등 일부 학생이 참여하는 숙박형 캠프, 숙박형 청소년단체 활동 등과 사전답사를 다녀온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는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심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단,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가능함.



14. (보험가입) 1일형 현장체험학습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일형 현장체험학습 중 **고위험 활동(수상 · 장거리도보(10km이상) · 익스트림스포츠활동 · 운전(동력이용)활동·병영체험·동계스포츠활동·놀이기구체험 등)**은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그 외의 1일형 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15. (인솔자)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인솔자를 1개 학급 또는 참여 학생 25명 기준으로 2명 이상 확보 운영해야 하나요?

모든 체험학습의 경우 학급당 2명 또는 참여 학생 25명(학급이 아닌 경우) 기준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함을 권장합니다. 인솔자는 학교 여건에 따라 교직원, 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급당(참여 학생 25명 당) 교사 1명이 인솔할 수 있습니다.



16. (체험학습 시수 편성) 현장체험학습 운영으로 교육과정 수업시수와 미참가학생의 교육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나요?

현장체험학습 1일 수업 시수 편성은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효과 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운영 계획서에 사전 계획된 학습 시간 만큼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단, 체험학습 운영 계획서 수립 시 미참가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일 수업 시수를 편성하여야 합니다.



17. (체험학습 시수 배정) 현장체험학습 운영시 이동시간을 제외한, 체험장소에서의 실제 활동시간 만큼만 교육과정 시수에 편성해야 하나요?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따른 소요시간에 맞게 편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의 행사(현장체험학습)의 특성에 맞춰 이동시간과 체험활동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교과 및 창의적체험 활동의 영역별 활동이 있을 경우 연계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18. (대중교통 이용) 현장체험학습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경우는 출퇴근시간 혼잡 등을 고려하여 다중 밀집상황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교통 안전 및 예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여행자보험가입을 권장합니다. 또한, 체험학습 이후 학생의 안전 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타

19. **(계약)** 사전에 구두계약(가계약)을 통해 특정 시설과 진행해도 됩니까?

체험학습의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써 단순히 시설이 깨끗하다는 이유로 특정 시설을 정해놓고 구두계약(가계약)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청렴도 제고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 **(학운위 심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 각종 견학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해도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중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3호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 제5호(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제6호(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21. **(학운위 심의)** 학년초 학교 교육과정을 심의한 후 발생하는 교육과정 운영내의 각종 행사·활동·프로그램 등은 이미 심의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교육과정 운영 내의 체험학습 등은 학년초 학교 교육과정심의에서 대략적으로라도 심의하였다면, 다시 심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6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나, 학년초 심의 당시에는 학부모 부담 경비에 관한 내용이 없었는데, 뒤늦게 학부모의 부담이 필요하게 된 경우라면 제1항 제5호의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으로써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 당초 심의받은 계획이 대폭 변경되거나, 구체적 계획 수립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중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지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청렴)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를 무료로 입장시키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고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설의 무료 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 (전세버스) 사전의 배차계획에 따라 차량조회를 했으나, 출발 당일 다른 차량을 배차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운행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차량점검 및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배차된 차량번호판 등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차량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받아 차량조회를 하는 등의 사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4. (인솔자) 학부모(또는 자원봉사자 등)를 인솔자로 할 경우 여행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교직원을 제외한 인솔자의 여행경비도 학교에서 업체로 일괄 송금해야 합니다. 단, 사전에 내부결재를 득하여 기타보조인력으로 위촉하고, 체험학습 계획서에 기타보조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 경비의 부담주체가 명확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비의 경우 필요한 차량 대수에 대해 계약한 후 전체 인원(인솔자 포함)으로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25. (숙박시설) 소규모로 실시할 때 펜션, 민박 등을 이용한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한지요?

숙박시설에 대한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업체에서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이용 시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최근 1년 이내) 후에 이용해야 합니다.



26. (안전요원 연수) 안전요원 연수의 유효 기간은 있나요?

2025년부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경우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이수하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면 내부안전요원으로 자격이 부여되고, 매년 학교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외부 안전요원의 경우 국내여행안내사 등 기본 자격을 소지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14시간)를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교직원의 경우 1년 휴직 또는 1년 심폐소생술 미이수의 경우는 안전요원 연수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27. (국외 체험학습 답사 대리 실시) 내년에 처음으로 국외 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외라서 사전답사로 인한 출장비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여행사가 대신 답사해도 될까요?

처음 실시하는 경우 1회 이상의 답사를 다녀와서 실시해야 합니다. 출장비가 많이 들더라도 실제 학생 인솔 담당자가 체험학습 활동상의 체험지와 숙박장소의 안전상 위험요소와 동선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은 외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원과 학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전답사를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진, 동영상 등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매년 같은 학교 간의 국제교류학습인 경우 또는 같은 체험 장소·숙박업소의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현지 관계자를 통한 해당 학년도 안전관련 서류로 사전답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8. (사안 보고) 현장체험학습 운영 중 학생이 넘어져서 무릎을 긁히고 상처가 났는데 이것도 사안보고를 해야 하나요?

보고할 만한 사안인지 담당자가 판단하시되, 단순 찰과상은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원 진료 및 치료가 요구되는 인명사고나 집단 식중독 또는 2명 이상의 감염병 등은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 해 주셔야 합니다. 병원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고나 차량만 긁히는 등의 접촉사고 등은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9. (학교회계) 체험학습 경비를 학교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학생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의 근거에 따라 수익자 부담 수입을 학교회계 편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처리시에는 분실우려, 체험학습 후 정산 어려움, 연말 교육비 정산불가, 수익자부담금 공개방안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체험학습비는 학교회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e-DASAN현장지원(현장체험학습 수익자 부담 처리)〉



30.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을 체험학습비 또는 수련활동 경비 지원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2020.6)개정으로 학교발전기금의 수익자 부담경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체험학습비 및 수련활동 경비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경기도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운용 및 회계관리요령-학교발전기금 관련 질의응답〉



31. (전세버스) 학교에서 체험학습 전세버스 계약시 연식을 제한해도 되나요?

법령상 학교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에 따라 차령은 11년이며, 정기검사와 안전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차령 이내의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V 참고 사이트 및 모바일 앱

구분	사이트	비고
경기교육모아 -현장체험학습	https://more.goe.go.kr	- 경기도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안내 - 사전사후 정보방 - 보조인력(안전요원)인력풀 - 매뉴얼 및 각종 서식 모음 - 안전교육자료 및 청렴자료 탑재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 -학교안전교육자료	https://www.goe.go.kr	- 안전, 재난대응 방법 소개 - 학교안전 교육자료 및 각종 안전정보 소개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www.crezon.net	- 전국 시도 현장체험학습 모델 및 우수사례 - 안전요원 구인/구직
학교안전정보센터	www.schoolsafe.kr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안전교육 자료실
국민안전방송	www.safetv.go.kr	유형별, 계절별, 생애주기별 재난안전 동영상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자연재난,사회재난,생활안전,비상대비 행동요령
청소년활동안전센터	www.yas.or.kr	- 시설 및 활동 안전에 대한 각종 자료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서비스	www.youth.go.kr	- 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및 인증여부 - 시설 및 활동 안전에 대한 각종 자료
조달청 맞춤형 수학여행서비스	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서비스-여행-체험서비스
대한인명구조협회	www.ksa.kr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및 인명구조교육
TS한국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 진위 확인 등 (사업소개-안전자원정보-자동차안전-전세버스 정보조회)
기상청	www.kma.go.kr	날씨, 지진, 황사 등의 기상 관측 및 기상처체험학습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전문정보-업체검색-업체명 검색
감염병포털	dportal.kdca.go.kr	감염병 정보, 소식, 지침 등 안내
안전 디딤돌(앱)	정부대표 재난안전 포털앱으로 재난발생시 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재난 안전 정보 제공	
내손안-식품안전정보필수앱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전국 식품 업체와 제품 정보 확인	
안전해(海)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해양안전사고 예방 방재기관 대국민 구난활동 지원 등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 체감형안전서비스	

VI 현장체험학습 업무 담당자 연락처

2025.1. 기준

기관명	부서명	유선번호	주소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580-5162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17(읍내리)
고양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900-2855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마두동)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	02-2610-1442	광명시 광명로 777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280-7104	광주시 광주대로 178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550-6120	남양주시 경춘로 520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과	390-1123	군포시 금정동 청백리길 17
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	980-1214	김포시 김포한강로11로 342(운양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	860-4419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부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032-620-0161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19(중3동)
성남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784-7350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서현동)
수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250-1466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영화동)
시흥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488-4520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11-2(정왕동)
안산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412-4542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안성교육지원청	교육과	678-5207	안성시 명륜길 82(구포동)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380-7017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양평교육지원청	교육과	770-5643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126번지
여주교육지원청	교육과	880-2342	여주시 청심로 181
연천교육지원청	교육과	839-0164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56-1
용인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8020-9218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삼가동)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	820-0048	의정부시 가능로 36번길 29 (의정부1동)
이천교육지원청	교육과	639-5677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파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940-7221	파주시 금정2길 55
평택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650-1555	평택시 평택1로 80(비전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과	539-0112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371-0622	오산시 북삼미로 119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지도 · 자문

김금숙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국장
현계명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
강운학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관

기획위원

김연희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사
문현선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사
구민정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주무관

집필 · 편집

한도연 | 낙민초등학교 교장
김영인 | 백석고등학교 교장
김경희 | 군포화산초등학교 교감
심태진 | 문산고등학교 교감
정우조 | 금정초등학교 교감
김 영 | 평동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도형 | 배곧초등학교 교사
손미영 |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이희숙 | 의정부용현초등학교 교장
이병달 | 별하람초등학교 교장
박정우 | 와부고등학교 교감
정연진 | 호곡중학교 교감
조효남 | 발곡고등학교 행정실장
신상옥 | 남양주도곡초등학교 교사
이민지 | 솔뫼초등학교 교사
최서원 | 회룡중학교 교사

발행일 | 2025년 2월

발행처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금오동)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제작처 | 투인원(031.243.8480)

※ 매뉴얼의 세부 내용은 소속 지역의 교육지원청 체험학습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